

## 조선후기 조령산성의 운영과 수성절목\*

차 용 결\*\*

1. 머리말
2. 수성절목의 마련과 산성작대군
3. 산성운영의 물적 자원과 그 운용
4. 수성용 군기의 제작과 보유실태
5. 맺음말

### 1. 머리말

조령산성은 문경새재, 혹은 조령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sup>1)</sup> 조령은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을 잇는 중요 교통로로, 이 고개와 인근의 남북

\* 이 논문은 2012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2).

\*\* 충북대학교 교수

1) 사적 147호(1966년 3월 22일 지정)의 명칭은 “문경관문”으로, 그 내용은 ‘제1, 제2, 제3관문 및 부속성벽’이었다가 2011년 7월 28일 “문경 조령관문”으로 명칭이 변경 고시되었다. 조령 및 조령산성을 대략 알 수 있는 종합적 이해로는 다음의 책들이 도움이 된다. 문경새재박물관, 『문경의 길과 고개』 - 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 문경새재박물관 조사연구 총서 7, 실천문화사, 2002; 문경시·안동대학교박물관, 『문경새재』 - 문경새재지표조사보고서 -, 2004; 신정일, 『영남대로』 - 부산에서 서울까지 옛길을 걷다 -,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07; 안태현, 『옛길, 문경새재』, 대원사, 2012.

으로 통하는 교통로에는 이미 삼국시대 이래 축성이 이루어져 중요한 요새로 인식되고 있었다. 16세기 말의 왜란을 계기로 소백산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가장 짧은 교통로인 고갯길 일부를 막는 성벽이 축조되어 고갯길을 차단하는 방어시설이 처음 마련되었고, 이후 1708년(숙종 34)에 고개 마루와 계곡을 횡단하는 세 줄기의 석축 성벽과 성문을 새로 수축하여, 북쪽의 높은 산등성이[上城, 혹은 嶺城이라 하고 성문은 鳥嶺關]에서 남쪽으로 계곡을 두 줄기 성벽[中城, 혹은 鷹巖의 鳥東門과 下城, 혹은 草谷城의 主屹關과 水門]으로 각기 내외의 성벽을 가진 산성이 되고,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독립된 운영단위로서의 진[獨鎭]을 두어 군사적 거점으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조선후기에는 산성의 수축과 훈련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절목(節目)으로 제정하여 준용토록 하였다.<sup>3)</sup> 축성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사목(事目)이 마련됨에서부터 시작하여, 축성 완료에 따라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성조(城操)나 수성(守城)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조치를 절목의 형태로 확정하여 산성 경영의 지침을 정비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4)</sup>

2) 조령산성과 주변의 관방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적지 않다. 역사 및 고고학분야의 주요 연구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차용걸, 「조령관방시설에 대한 연구」(I) - 교통로로서의 조령과 관방시설로서의 조령관에 대한 기초적 정리 -, 『사학연구』 32, 한국사학회, 1981; 김양수, 「조선시대의 문경조령연구」, 『중국문화』 제3권 3호, 청주대학교 중국문화연구소, 1981; 차용걸, 「조령관방시설에 대한 연구」(II) - 계림령로문제의 정리 -, 『최영희선생화갑기념한국사학론총』, 탐구당, 1987; 안태현, 「문경새재 어류산성에 대하여」, 『학예지』 1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6; 차용걸, 「조령관방시설에 대한 연구」(III) - 조령산성의 연혁변천 -, 『중원문화연구』 3,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3) 도성의 수성절목은 1746년(영조 22) 12월 왕명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1751년 9월 『守城綸音』으로 반포되었다. 읍성 관련 고문서로는 1707년(숙종 33) 3월의 「築城後節目報狀竝錄」(연세대학교도서관)이 江界府城, 즉 읍성의 수축과 운영에 관련된 것이 있고, 산성 관련 절목으로는 1756년의 「平安道慈母山城節目」(규장각도서 17228) 등이 남아 있다.

4) 수성절목은 『선조실록』 권 85, 30년 2월 계유 기록에 처음 보인다. 『선조실록』 권 87, 30년 4월 기축의 기록에는 「京城守城節目」이 보이며, 호란에 대비해 평안·함경·황해도와 여러 성에 대한 수성 절목을 정비하는 내용이 『비변사등록』 광해군 10년 戊午 5월 22일에 보인다. 인조 14년(1636) 8월 4일 기록의 남한산성 관련 수성절목(후에 『南漢志』에 일부 실림), 숙종 4년(1678) 강도(江都)설축 돈대절목과

조령산성의 경우에도 수성 절목의 마련 사실과 그 내용이 1751년(영조 27, 신미) 12월 16일의 『비변사등록』 기록에서 확인된다.<sup>5)</sup>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진행된 바 없었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개략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령산성에 대한 수성관련 절목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조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조선후기에 조령산성의 수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겨진 절목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대략 고대로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조령과 그 주변의 여러 관방시설들이 가지는 역사적, 고고학적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많은 자원을 동원해 성벽을 쌓고, 이어 독립된 군사 단위를 이루어 약 200년간 운영된 실체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18세기에 산성을 수축한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별도의 진을 설치하여 운영한 실체적 내용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 글에서는 수성절목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산성은 특히 다른 곳의 산성들과 달리 교통로 자체를 막아

강도축성시 응행절목, 이듬해 8월의 「大興山城措置節目」, 숙종 10년(1684) 1월 22일 기록의 통영 축성에 대한 수성절목, 1695년(숙종 21) 6월의 「文殊山城節目」 등이 있다. 이후 1731년(영조 7)의 「羸石山城守城節目」, 1747년(영조 23) 5월의 「摠戎廳主管北漢蕩春臺節目」 1749년 4월의 「北漢軍餉糶糶節目」, 같은 해 8월의 「西林城制置節目」과 1751년(영조 27) 9월에 도성의 「守城節目」, 1754년(영조 30) 東林城 수성절목, 1793년(정조 17)의 華城 수성절목(癸丑節目)과 1797년의 화성 外營守城節目 등이 마련되었다. 절목은 확정된 후 다시 追入되는 내용이 있으면 첨부되고, 城操節目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의 절목이 같은 산성에 여럿 있을 수 있었다. 이가운데 화성의 수성절목에 의한 군사배치와 城操圖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최근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태완, 「〈華城府城操圖〉 속의 화성 축성과 군사배치」, 『학예지』 2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13.

5)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 “啓曰 頃年因慶尙監司狀啓烏嶺山城守城節目 令道臣上送之意覆啓分付矣 同節目既已上來 自本司添削以入之意 敢啓 答曰 允”이라 하고 이어 “慶尙道聞慶烏嶺山城節目”이란 제목으로 全文이 실려 있다.

축조한 산성이었던 점에서나, 임진왜란 이후 친협한 교통로를 막는 관방으로 주목되어 왔던 점에서 자못 분석 성과가 기대된다.

조령산성 수성 절목의 이해를 통해 조선후기에 운영된 지방의 여러 산성들 가운데 19세기 말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해가던 조령산성의 특징적 성격 일반이 보다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수성절목의 마련과 산성작대군

『비변사등록』에 기록된 조령산성 수성절목은 조선후기에 경영된 다른 산성들에 적용된 여러 절목들과 비교하여 보면 간략한 내용이다.<sup>6)</sup> 이 절목은 1749년에 그 초안이 마련되고, 2년간 비변사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왕에게 보고되었으며, 왕의 재가를 얻은 1751(영조 27)년 12월에 확정되어, 이듬해(1752, 임신)부터 시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성관련 절목의 성립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된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성책』이 있기 때문이다.<sup>7)</sup> 비변사등록의 절목 내용과 이 고문서 기록의 상관관계를

6) 이보다도 더 짧은 내용으로는 「文殊山城節目」(『비변사등록』 숙종 21년 을해 6월 23일)이 있다. 1695년 초 강화유수 閔鎭周가 문수산성 축성을 담당하여 관할했고, 守城節目을 講定한 7개 조목인데, 내용 모두가 승군 총섭관련 조목들이다. 단, 이후 더 많은 조건들이 추록될 성격의 것임을 마지막 조목에 명기하고 있다.

7) 『慶尙道聞慶縣鳥嶺山城節目成冊』은 규장각도서 도서번호 17209로 6張 1冊이다. 표지에는 備邊司라 하여 문서 주관부서와 辛未 十二月 八日이라 行書로 쓴 것이 1751년(영조 27, 신미) 설달해야 검토가 완료된 듯하다. 內題는 “乾隆十四年正月 日 慶尙道聞慶縣鳥嶺山城節目成冊”이고 2장 반(5頁) 분량에 걸쳐 12조목을 동일한 해서체로 쓰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행서 내지 草書로 표시하였다. 그 뒷장에는 觀察使兼巡察使 南 이라 쓴 아래 수결이 중앙 아래로 있고, 官印이 15 곳에 찍힌 것이다. 뒤의 겉표지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 內題에 나타난 年紀가 건륭 14년(1749, 영조 25, 기사) 정월이므로 수성절목 마련의 지시에 따라 처음 작성하여 상송(上送)한 때인 듯하고, 표지에 신미 12월이라 한 것은 최종 검토가 완료되어 왕에게 아뢴 때로, 이듬해인 1752년(영조 28, 임신) 정월부터 시행된 것이라 여겨진다. 내용의 全文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홈페이지(<http://e-kyujanggag.snu.ac.kr>)

보면, 절목성책은 1749년(영조 25) 정월, 당시 경상감사 남태량(南泰良)이 작성하여 비변사에 올린 것이고, 이후 비변사에서 첨삭(添削)하여 최종적으로 왕에게 보고되어 재가된 것이 『비변사등록』에 기록된 내용이다.<sup>8)</sup> 조령산성에 관한 이 절목은 한양도성의 수성절목(守城節目)이 완성되어 특별히 임금의 윤음(綸音) 형식으로 반포된 같은 해에 완성된 것이어서, 조선시대 후기 성곽의 관리와 운영의 매뉴얼 이해에 도움이 된다.<sup>9)</sup>

조령산성의 경영과 관련된 절목성책(당초 작성되어 첨삭되기 이전의 것)이 결국 수성 절목(비변사등록에 확정되어 기록된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된 셈이다.

조선후기에 경영된 지방 소재의 산성들은 진(鎭), 특히 독진(獨鎭)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각기 소속 고을(屬邑)을 배정받아, 이를 인적·물적 기반으로 삼아 운영되었는데, 이는 도성과 배후의 북한산성, 광주 유수부의 읍성이기도 한 남한산성 등이 중앙 군영에 의해 경영되고, 강도(江都)와 송도(松都)의 읍성과 산성[大興山城] 그리고 정조 때 완성된

에서 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 8) 위의 자료 內題에 乾隆十四年正月로 시작되고, 맨 뒤의 보낸 사람이 觀察使兼巡察使 南이러 하였는데, 당시 경상감사는 『영조실록』 권 65 23년 정월 임자에 “慶尙監司南泰良陞辭引見 敎曰 ‘今聞關伯新立 予實慮之狡倭 視萊伯釜鎭爲重 予知卿素剛直 宜立法於此等處 卿其勉哉’”라 한 것이 있다. 이후 瓜滿되어 2년 뒤인 1750년에 감사는 閔百祥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처음 왕의 요청에 부응하여 동래와 부산진 등의 방어력 증강을 위한 입법의 일환으로 南泰良이 재직할 당시 조령산성에 대한 절목의 초안이 작성되어 비변사로 올렸던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 9) 조선후기 축성과 관련된 절차와 제원 등을 자세히 밝힌 논문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대표적이다. 장필기, 「임진왜란 직후 축성역 동원체계의 한 형태」 - 김오산성 수성장 鄭邦俊 의 축성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5, 한국고문서학회, 2004; 유재춘, 「18세기 전주부성 축성기록 ‘築城啓草’ 연구」, 『사학연구』 81, 한국사학회, 2006. 산성의 축성과 이후 관리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최근의 것으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백종오, 「조선 후기 북한산성의 축성과 운영체계」, 『한국사학보』 50, 고려사학회, 2013. 현존하는 사목과 節目 등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는 다음 책이 참고된다. 금인걸·박경하·박병련·이해준·한상권, 『비변사등록사목·절목류집성』, 『비변사등록사목·절목류체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도성의 수성절목인 ‘수성책자’를 중심으로 도성 수비를 종합 고찰한 업적으로는 다음의 책이 있다. 노영규, 『영조 때의 한양도성수비정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수원 유수부의 화성(華城)과 그 배후의 독성산성(禿城山城)이 장용영에 의해 관리되면서 각기 여러 속읍을 인적 물적 자원으로 삼은 것의 축소판과 같았다.

조령산성의 절목도 그런 이유로 수성절목이라 표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잘 반영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12조목에 걸친 내용은 대략 수성(守城)과 관련된 장졸의 구성과 관련된 (1) 수성관련 인적 조직인 ‘산성작대군(山城作隊軍)’에 관련된 내용, (2) 산성의 수축 등과 관련된 산성의 성첩(城堞)등의 관방시설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 (3) 산창(山倉)의 운영과 산성 유지 양곡의 조적(糶糶)과 같은 산성 운영의 경제적 기반에 관한 내용, (4) 성내 거주 주민에 대한 침탈의 금지와 금송(禁松), 금화(禁火) 등 자원 보호를 위한 금단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절목의 각 조목들은 목의 머리마다 ‘一’로 되어 순서 기억이 쉽지 않으므로, 편의상 기록된 순서를 따라 ①번, ②번, ③번...의 조목이라 표시하여 구분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산성을 지키는 군병을 규정한 ①번 조목은 기본구성 인원에 관한 내용으로, 산성운영의 주축인 ‘산성작대군’의 주요 인적자원을 지적한 조목이다. 이하 직접적인 군병속읍(軍兵屬邑)과 조령산성 수성의 기본적인 인적자원 구성을 나타내는 조목을 차례로 알아보자. 우선 ①번 조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령산성에 수성장(守城將)을 두었으니 성을 지킬 군졸이 꼭 있어야 하므로 문경현의 속오군 4초(哨)를 산성에 전속(專屬)시킨다. 그런데 이들 4초의 군졸로는 3겹의 성을 지키기에 부족할 것이므로, 문경현의 제색(諸色) 군보(軍保) 및 각 영(營)에 모속(募屬)되어 속오(東伍)를 겸하지 않은 자를 모두 사정(査定)하여 ‘산성작대군(山城作隊軍)’이라 이름을 지어, 이미 이속된 속오 군병과 합쳐 조직[團束]한다.

“문경을 수성독진(守城獨鎭)으로 삼았지만, 봄과 가을에 조련하는 일[城堞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주관하게 되므로, 속오군을 이속시킨 만큼의 병력을 당연히 다른 고을에다 더 배정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상주진(尙州鎭) 소속의 보군(步軍)은 원수(元數)가 이미 많아, 비록 이들 4초(哨)의 병력이 없어도 3부(部)의 체제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이 될 것이니, 병사는 감사와 의논하여 (다른 고을에)더 배정하지는 말고 수를 헤아려 적절히 참작하여 조정하여 부사(部司)의 규식[式]에 맞게 정하도록 한다.”<sup>10)</sup>

①번 조목은 특히 두 가지 사실을 규정하였다. 먼저 조령산성이 축성되어 독진으로의 경영이 시작되자, 경상도의 영진·진관의 속읍(屬邑) 변화가 뒤따라야 하였고, 그에 따른 군병의 소속 이동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조령산성에 ‘산성작대군’이란 이름의 수성관련 군병조직이 새롭게 조직됨을 알려준다. 조령산성진의 군병속읍 이속(移屬)과 ‘산성작대군’이 어떤 병력에 의해 조직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가. 조령진의 설치와 상주진 속오군의 변동

조선 후기 경상도 전체를 관할하는 관찰사 겸 순찰사는 대구에 영(營)을 두고 육로군의 군정을 총괄하였다.<sup>11)</sup> 관찰사가 주재하는 감영 구관(句管)의 가산산성(架山山城)이 칠곡도호부(漆谷都護府)를 성내에 두고 경영되었는데, 여기에는 칠곡·군위·의흥·신녕·하양 5읍의 군병이 전속(專屬)되고, 또 감영 구관의 산성이었지만, 동시에 이 산성은 좌병사 관할 구역의 범위 내에 위치해 있었다.

감사 아래 육군의 관할은 좌·우 도로 나뉘어 각기 좌·우 병마절도사의 관할 구역으로 삼았으며, 훗날 토포영(討捕營)을 형성한 각기 3인씩의 영장(營將)을 거느리는 영장제가 운영되었다. 이중 좌도 병사가

10)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원문과 번역의 대략 내용은 항시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하 원문 제시는 생략한다.

11) 『여지도서』 경상도 관찰영 관직의 관찰사에 ‘兼巡察使 文二品 開營於大丘府 總治一道之政 二周年交遞…’라 하고, 휘하 幕僚로서 都事(文五品 卽觀察使幕府從事…)와 中軍(武三品 佐治觀察使軍事…) 등이 있었는데, 특히 中軍은 관찰사의 군사관련 업무의 보좌를 맡았다.

관할하는 속읍은 3영(전영 15읍, 중영 9읍, 후영 8읍) 소속 32읍과 그 구역에 속하는 독진 1곳(동래진, 금정산성)에 소속된 3읍(동래·양산·기장) 등 모두 합해 35읍이었다. 여기에 위의 순영직속 가산진 소속 5읍 군병을 합해 40고을의 병마를 좌도 병사가 관할하였다.<sup>12)</sup>

우도 병사는 그의 관할 구역이 3영(좌영 5읍, 별중영 8읍, 우영 14읍) 소속의 27읍과 독진 소속의 4읍(독용산성진의 성주, 고령, 금오산성진의 선산, 조령산성진의 문경)등 경상우도 관할구역 내 31읍의 육로 병마를 관할하였다.<sup>13)</sup>

조령산성의 경영과 관련해서 보면 우도 병사 관할하의 좌영(左營)인 상주진에 소속된 군병에서 조령산성이 독진으로 되자, 군병속읍이 될 고을의 군병을 전속시킨 것인데, 이 가운데 1차적으로 산성이 위치한 문경현의 군병이 논의되었다.<sup>14)</sup> 상주진 군병은 경중(京中) 군문(軍門)과

12) 『여지도서』 경상도 좌도병마절도영 관직 병마절도사에서 ‘…武二品 開營於蔚山府內廂 掌左道四十官陸路兵馬事 二周年交遞…’라 하였고, 武三品の 虞候(佐治兵馬節度使兵馬事 二周年交遞)가 있었다. 軍兵에서 主鎮, 前營(안동), 中營(대구), 後營(경주)의 경우는 營將 소속 속읍 및 속읍의 총수, 군병의 직급별 인원수를 들었다. 끝에 東萊鎮(府使 兼守城將), 架山鎮의 소속 군병을 차례로 들었는데, 맨 마지막의 架山鎮 군병 끝에 ‘軍兵專屬巡營’이라 언급하였다.

13) 『여지도서』 경상도 우도병마절도영 관직 병마절도사에서 ‘…武從二品 開營晉州牧掌右道三十一邑陸路兵馬 二周年交遞…’라 하고 武從三品の 虞候가 있었다. 군병에서는 本營, 左營將(상주진) 소속 군병과 속읍 5읍, 別中營將(김해진) 소속 군병과 속읍 5읍, 右營將(진주진) 소속의 군병과 속읍 14읍을 기록하고, 그에는 독진인 금오산성진(속읍 4), 독용산성진(속읍 2), 축석산성진(속읍 1), 조령산성진(속읍 2)의 순서로 직급별 군병수를 기록한 다음 말미에 속읍을 기재하여 기재 방법과 순서가 약간 다르다. 31읍의 군병을 관장한다는 표현은 右營將이 있는 진주가 축석산성진 소속으로 겸친 것, 좌영장 소속의 개령·금산·지례의 3읍이 금오산성진과 겸친 것을 제외하면, 당시 경상도의 71읍에서 좌병사 관할의 40읍을 뺀 숫자에 해당된다. 감영에서 우병사 관할의 별중영 속읍이 8읍이다가 우병영의 기록에서는 진해·거제·웅천의 3읍이 빠지고 5읍으로 된 것 등의 차이가 있다.

1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8 상주목 진관에서는 소속 관할이 상주목, 성주목, 선산도호부, 김산군, 개령현, 지례현, 고령현, 문경현, 함창현의 9읍으로 되어 있다. 조선 후기 영장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위의 표현에서 보이는 左營將 소속의 별칭으로서의 상주진이라 보아야 하므로, 진관제 아래 9읍에서 영장제 아래의 속읍을 거쳐 다시 산성이 독진이 되자 성주와 고령은 독용진(독용산성)·선산·김산·개령·지례는 금오진(금오산성)·문경·함창은 조령진(조령산성)의 군병속읍이 되었으므로, 좌영장 휘하의 속읍군으로 남은 좌영 영장속읍은 본읍 상주목뿐이었다. 속읍

병조 등 중앙 관청 소속[上納 부분] 이외, 지방의 감영 소속과 수군통제영 소속, 그리고 육로의 군병들이 경상우도병사 관할 아래 좌영장 휘하 속읍 등이었으므로, 상주진관의 좌영장 아래 편성된 나머지 5읍(상주·김산·개령·지례·함창)이 곧 상주진의 진관 군병속읍으로 남게 되었다.

진관제 아래의 상주진(尙州鎭)은 상주를 포함한 진관체제 아래의 9개 고을[상주·성주·고령·선산·개령·함창·문경·지례·용궁]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인조 때 선산 금오산성이 수축되고(1638), 숙종 초에 금오진이 독진으로 되고(1675), 선산의 군병뿐만 아니라 개령·김산·지례도 금오산성진의 속읍이 되었다.<sup>15)</sup> 또 성주목과 고령현은 독용산성진의 속읍이 되었다. 즉, 독용산성(禿用山城)이 운영되자 그 군병속읍으로 당초의 상주진 소속의 속읍에서 성주목과 고령현 두 고을의 군병이 독진인 독용산성에 전속되는 변화가 있었다.<sup>16)</sup>

조령산성의 경우에도 산성이 소재한 문경현의 속오군이 모두 산성으로 이속(移屬)되어 조령진에 전속(專屬)되어야 하였다. 이에 따라 상주진, 즉 경상 우병영 소속 좌영의 영장 소속 군병속읍은 당초 9읍 군병에서 3처 산성의 독진으로 이속된 성주, 고령, 선산, 개령, 김산, 지례, 문경, 함창의 군병의 속오군이 독진으로 된 산성에 이속되고, 이들 속오군을 제외한 상주 1읍 속오 보병 약 3,700여 명이 전속으로 남게 되었고, 군병의 속읍이 복잡하게 분할되기에 이르렀다.<sup>17)</sup>

군이 아닌 다른 병종은 아직 상주진 소속이라 할 수 있다.

15) 『여지도서』 경상도 금오진 선산도호부 관액 금오산성 외성에서 “戊寅監司李命雄府使李格所築 屬邑開寧金山知禮 各有軍糧軍器 春秋鍊習皆合操 乙卯因啓下事日本府爲獨鎭 別將爲中軍。”이라 하여 적어도 군향, 군기, 성조속읍이 된 것을 밝히고 있다.

16) 『여지도서』 경상도 독용진 성주목의 진보에서 ‘舊屬尙州鎭 今爲禿用鎭 高靈軍兵屬焉 別將一人 僧將一人 守堞軍官二百人 鎭吏一人’이라 하고, 관액의 독용산성에서 “肅廟朝乙卯 監司鄭重徽聞于朝 牧使李時顯甲寅改築 周四千五百八十一步 有東瓮城將臺東西南北四砲樓東門水口門南小門 內有三溪一泉一寺客舍東西兩倉高靈倉本州高靈各置軍器庫.”라 하여 1699년 건의하여 영조 10년인 1734년 수축하여 성주목과 고령현을 군향 및 군기속읍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17) 『증보문헌비고』 권 제119 병고 11 주군병 경상도에서는 좌영장 소속의 속읍 5고

산성이 수축되고 조령진으로 되면서 여기에 절목 규정대로 ‘산성작대군’을 두게 되었다. 이에는 속오군과 제색 군보로서 일정한 범주 내의 새로운 작대(作隊)가 병력을 이루게 된 것이다. 독진을 형성하는 군병으로서의 산성작대군은 위의 조목 내용에서 보듯이 산성에 전속된

㉠ 문경의 속오군 4초의 병력,

㉡ ‘문경의 제색(諸色) 군보(軍保)와 각 영(營)에 모속(募屬)된 자들 가운데 속오(東伍)를 겸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는 병력을 모두 사정(査定)하여 포함토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의 문경 속오군은 『여지도서』 성립 전후에 작성된 것이라 여겨진 읍지들에서 모두 그 숫자가 773명으로 파악되어 있다.<sup>18)</sup> 이 숫자는 4초(哨)라는 개념과 서로 모순된다. 즉, 1730(영조6)년 9월의 「속오절목」에 의하면 속오군 편성의 기준이 115명을 1초(哨)로 하는 편제로 되어 있다. 즉, 초관(哨官) 1명 아래 3개씩의 대(隊)를 거느리는 기총(旗總) 3명, 각 기총 아래 원군(元軍) 10명씩을 거느리는 대장(隊長) 3명씩이 두어지는 구조이므로, 모두 9명의 대장과 대(隊)마다 화병(火兵) 1명씩이 두어졌으니, 이들을 합하면 원군[속오군] 3대씩 3기가 1초이므로, 1초의 속오군은 총 90명, 대장과 화병 각 9명씩 합 18명, 기총

을의 속오군은 마병 속오 4초(보인 764), 보병 속오 35초(보인 4,052), 표하군 334(보인 334), 수솔 624(보인 624)이다. 이미 1751년 당시 파악된 속오 보병은 절목정책에서 상주진 보군 元數가 3,700여명이므로 문경의 4초 병력 없어도 3부 조직에는 충분하다고 하였다.

18) 申厚湜 編, 1997, 『集註 聞慶史』(聞慶史發刊委員會)에 실린 申忠國 手澤本 「鳥嶺 鎮聞慶縣誌」(『知舊錄』에 실려 있다고 함)의 경우 『여지도서』에 앞서는 시기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시된 필사본의 읍지 자료들에 의하면, 1752(영조 28)년 독진이 된 조령진 문경현의 군병에서 架山城丁軍 7명, 金烏山城丁軍 4명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東伍本營軍(혹은 本鎮東伍軍)은 773명이라 하였다. 이후 『여지도서』 경상도 조령진 문경현 軍兵에서도 속오군은 773명으로 변화가 없으나, 보다 늦은 1789(정조 13)년 교정된 신만중 교정본 「聞慶縣誌」 군액에는 속오군이 764명으로 변화되어 기록되었다. 『여지도서』는 작성의 기준연도가 己卯帳籍인 점으로 보아 1759(영조 35)년 이후이고, 여지도서가 1765(영조 4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령산성 수성절목 성립 이후가 분명하다. 최영희, 『해설』, 『輿地圖書』 上, 국사편찬위원회, 1973.

3명, 그리고 초(哨)마다 서기(書記), 기수(旗手), 고수(鼓手) 각 1명씩이었으므로 초관을 포함한 1초의 총원은 115명이었다.<sup>19)</sup>

그렇다면 문경의 속오군 4초는 약 460명 내외의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773명이란 숫자가 된다는 것은 모순된다. 조령산성의 속오군 가운데 문경현의 속오군이 7초(哨)라는 다음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주목된다.

“문경에 사는 유학 민우룡(閔雨龍)이 상소하여 말하기를…무자년(1708)에 이르러 초곡(草谷)에 중성(中城)을 쌓고, 임신년(1752)에 이르러 문경에 독진(獨鎭)을 비로소 설치하여, 그 뜻과 계획이 진실로 아름답고 좋았지만, 아직 한 자[尺]의 땅이나 한사람의 주민도 떼어 붙여주지 않아 아쉽습니다. 다만 3초(哨)의 군인을 7초의 군병으로 배나 더 두게 하여 다른 조치와 시설이 커다란 진(巨鎭)을 모방했기 때문에, 군교(軍校)들의 명색(名色)은 전에 비해 열배 백배나 많아졌으나, 토지와 주민은 다만 전처럼 조잔한 일개 작은 현(縣) 하나뿐입니다. …”<sup>20)</sup>

이는 1772년 즉, 조령산성이 독진이 되고 수성절목이 시행된 해(1752)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의 말이다. 절목의 4초 규모의 속오군은 가정(加定)된 것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을 통해 당초 문경현, 혹은 조령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속오군은 3초에 불과했지만, 조령산성을 수축하고, 또 경영의 대책을 마련하여 4초의 속오군

19) 『비변사등록』 영조 6년 庚戌 7월 25일의 「東伍節目」에 의하면 部-司-哨-旗-隊로 구성되며, 3대-3기-4초-5사-5부로 구성하되, 각기 邑底부터 제1대로 시작하여 호적의 統戶 와 초대(哨隊)를 일치시키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고기비늘 [魚鱗]의 짜임새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慶尙道東伍奉足定給節目」(『비변사등록』 효종 5년 甲午 9월2 9일)에 의하면 이미 1654년에 절목 시행 때, 노잔군(老殘軍)과 복노(祿奴) 등의 처리를 통해 군보를 충분히 파악 확보하고 있다.

20)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8일. 본문은 다음과 같다. “聞慶幼學閔雨龍疏曰…及至戊子年 始築中城於草谷 至於壬申年 始設獨鎭於聞慶 其意則誠美矣 其計則誠善矣 而獨惜其未曾有尺地一民之劃付 只以聞慶三哨之軍 倍作七哨之兵 而凡他措設 輒倣巨鎭 故軍校名色 比前什百 而土地人民 則依前至殘之一小縣而已…”

병력을 증원시켜 7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11년[辛卯式]의 문경현 호구에서 남정(男丁)의 수효는 5,254명으로 파악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각종 응탈(應墮) 면역된 인구가 4,800명이어서 실제 남은 여정은 450여 명밖에 얻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근 고을의 몇몇 면(面)을 문경 소속으로 떼어 붙이는 할속(割屬)을 요구하는 내용이 위 인용사료에 포함되어 있다.<sup>21)</sup> 이런 기록으로 보아 독진이 되면서, 그리고 이 절목으로 확인되는 4초의 병력은 당초의 3초 외에 가정 증액된 것을 말함이고, 실제로는 당초 3초에 4초를 더한 7초의 속오군이 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령진에 소속된 속오군은 이후 증가되어 9초에 달하기도 하였다.<sup>22)</sup>

#### 나. 조령진 소속으로의 군병 이속

앞에서 살핀 속오군 외에 조령산성에 조직되는 ‘산성작대군’을 구성할 두 번째 자원인 ㉔의 ‘문경현의 제색 군보와 각 영(감영과 병영의 陸軍, 통영의 水軍)에 모속된 병력 가운데 속오를 겸하지 않은 자’는 어떤 신분의 군역자원인가? 지리지 기록의 자료들을 통해 일단 중앙관서와 관련된 병력[上納秩]은 조령산성 소속으로의 이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리지 자료들에서 모두 나타나는 군보의 종별 숫자에 변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령진에 소속케 된 제색군보(諸色軍保)의 대상은 경상도

21) 위의 사료. 문경현의 戶口자료는 『여지도서』의 己卯式年(1759) 3,366戶 남자 5,212口, 신만중 교정본 「聞慶縣誌」는 己酉式(1789)으로 3,553戶 남자 5,294口, 『영남읍지』는 1846[丙午式]년의 3,548戶 남자 5,287口, 『경상도읍지』는 1870[庚午式]년 3,524戶 남자 5,518口, 위의 『영남읍지』의 제21책 「聞慶邑誌」에 부속된 「聞慶府事例冊」의 경우 1894[甲午式]년의 3,904戶 남자 5,896名 등이 알려져 있다. 조령산성진이 운영된 시기 파악된 문경현의 丁男은 대략 5,200 내지 5,900명 정도였다.

22) 『증보문헌비고』 권 119 병고 11 주군병 경상도 산성에서 조령산성의 속읍은 문경과 함창으로, 수첩군관 300, 속오군 9초에 보인 1천54명, 표하군 20, 수솔 136, 승군 30으로 보인다.

도내의 각 영(營)에 소속된 병력 가운데, 통제영의 수군을 제외한 육군으로 문경 고을에 배정되도록 규정된 군보에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의 지리지 자료들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여지도서』 성립 전후의 자료로 수성 절목 성립 이전의 것이라 보는 기록(신사국 수택본 「읍지—조령진문경현—」, 이영기 소장본 「문경현지」, 계명대 소장본 「문경군읍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관직] 항목의 현감 겸수성장(兼守城將) 소속  
[천총(千摠) 1人], [파총(把摠) 2人], [초관(哨官) 7人]<sup>23)</sup>,
- [鎭堡] 항목의 조령진별장 조령진중군[本鎭中軍] 소속<sup>24)</sup>  
수첩군관(守堞軍官) 300人, 하리(下吏) 9人, 지인(知印) 5人, 사령(使令) 21名, 종[奴] 1口.
- [軍兵] 항목
  - ★ 경상감영에 소속되어 근무, 혹은 베[軍布] 등을 내는 인원수  
무부군뢰(武夫軍牢) 1名  
가산산성성정군(架山城丁軍) 7名  
금오산성방군(金烏山城防軍) 4名<sup>25)</sup>
  - ★ 경상우병영 소속  
친아병(親牙兵) 6名  
파발군[撥軍] 70名  
봉수군 50名  
봉수군의 보인[保] 150名
  - ★ 조령진의 속오군 773名
  - ★ 가덕진(加德鎭) 소속의 방군(防軍) 27名<sup>26)</sup> 지방군 소속 군인 합계 1,088명

23) [ ]내의 것은 『여지도서』 이전 지리지(신후식 편, 앞의 책에 실린 서로 다른 수필본)에 기록되고, 『여지도서』에는 기록이 없는 내용이다. 이들과 기괘관 27인이 곧 속오군의 지휘체계와 관련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장 휘하인 산성작대군에 포함되어야 할 직급별 인원이 된다.

24) 『여지도서』 경상도 조령진 문경현 鎭堡 鳥嶺鎭別將에 대한 설명에서는 ‘武四品軍官三百人 鎭吏九人 知印五人 使令二十一名 奴一口’라 하여 軍官은 守堞軍官, 下吏가 鎭吏로 나타나 이들이 동일한 존재의 異稱임을 알게 한다.

25) 신후식 편, 앞의 책, 城防軍, 혹은 防軍이 城丁軍으로 기록된 것이 있다.

26) 신후식 편, 앞의 책, 계명대 소장본 「聞慶郡邑誌」 軍兵에서는 29名으로 기록되어

‘산성작대군’을 만드는 병력에 포함되는 문경의 여러 가지 명목의 군사와 보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적되지 않았으나, 조령산성 수성 절목 성립 이후의 기록 자료인 『여지도서』에 나타난 여러 군병은 아마도 위에 제시된 당초의 군병에서 조령산성 수성 절목에 근거하여 문경현의 제색 군보와 각 영(감영, 병영, 수영 등)에 모속(募屬)된 병력 가운데 속오를 겸하지 않은 병력을 포함토록 하였다.

그런데 『여지도서』에는 현감 겸 수성장 수하의 이속(吏屬)과 군병(軍兵)을 밝히고, 또 별장 수하 군인 등의 숫자를 밝혔는데, 지전의 기록과 숫자의 변동은 없이, 다만 현감 겸 수성장 소속의 인원에서 아전(衙前)을 인리(人吏)라 표현하는 등의 변동이 있을 뿐이다. 또 별장의 관품을 무과 출신 4품직임을 부가하여 표현하였을 뿐, 인원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군병(軍兵) 항목에서는 훈련도감 포보(砲保)로부터 공조의 장인(匠人) 보(保)에 이르는 중앙에서 파악하는 군병에는 변동이 없고, 감영과 우병영 소속의 군인과 보인[軍保]에 대해서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동되어 나타나 있다.

- 변동된 이후의 소속 병력 [『여지도서』의 기록]
- ★ 감영, 혹은 통영 소속으로 수군(水軍)의 가덕진 소속 방군(防軍) 33명
- ★ 우병영 소속 아병(牙兵) 6명
- ★ 조령진 소속 (합계 1,042명)
  - 파발군[撥軍] 69명
  - 봉수군 50명
  - 봉수군의 보인[保] 150명
  - 속오군 773명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 「聞慶縣」의 軍兵總數에는 京各司諸色軍이 1,130명, 감영소속 8명, 통영소속 3명, 우병영소속 208명, 상주진속 587명, 금오진속 1명 등으로 지방 소속이 807명이라 하였다.

이처럼 변화된 군병의 종류와 숫자 기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감영에 소속된 군인들이 조령산성 수성절목 ①조목의 ㉠규정 내용의 일부인 ‘각 영(營)에 모속(募屬)된 자들 가운데 속오(束伍)를 겸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는 병력을 모두 사정(査定)하여 포함시킨다’는 규칙에 따라, 감영 소속 군병은 정리되고, 최종적으로 방군(防軍) 33명만 남게 되었다.

이들 방군이 육군인지 수군인지 분명치 않으나, 당초 가덕진 방군 27명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통제영 휘하의 수군(水軍)일 가능성이 크다.<sup>27)</sup> 가덕진(加德鎭)은 경상도 수군 4진(鎭) 가운데 가장 많은 만호영(營)과 별장 보(堡)를 거느린 곳이었다.

이처럼 수군의 방군이 연해지역의 고을 뿐 아니라 내륙의 고을에도 배정되어 있었음은 문경 이웃의 함창현에 통영(統營) 수군 94명과 보(保) 27.5명이 배정된 것이나<sup>28)</sup>, 용궁현에 수군 40명과 보 20명<sup>29)</sup>, 예천에 수군 46명 등이 배정된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하겠다.<sup>30)</sup>

그렇다면 당초 문경현에 배정되었던 수군은 조령산성 수성절목의 어떤 조목 규정에도 수군을 이속시키는 등의 문구가 없으므로 배정된 숫자대로 남게 되었고, 육군에 해당된 부분에만 절목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당초 문경현에 배정된 수군인원은 최소한의 수군이 배정된

27) 『여지도서』 경상도 통제영 창고의 兵庫를 ‘防軍布捧留所’라 한 것이 있다. 戰船에 서는 加德 戰船 2隻 兵船 2隻 伺候船 4척이 있다고 하였다. 가덕진은 통제영 소속이었다. 수군 관할의 군병 이속(移屬)은 절목 규정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수 있고, 防軍은 수군의 수포군(收布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8) 『여지도서』 경상도 상주진관 함창현 군병에서 지방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統營 水軍九十四名 保二十七名半 右兵營資備軍一名 主鎭軍二名 牙兵一名 烽軍一百名 釜山鎭炭軍七名 束伍步軍四百七十五名 馬軍二十九名 武學十八名 收稅匠二名.”이라 하였다.

29) 『여지도서』 경상도 안동진관 용궁현 군병에서 지방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水軍四十名 保二十名 武學三十五名 束伍軍五百四十九名 保六百十二名.”이라 하였다.

30) 『여지도서』 경상도 안동진관 예천군 군병에서 지방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束伍軍九百五十名 保九百五十名 別隊隨卒一百七十二名 保三百二十九名 水軍四十六名 釜山鎭炭射夫十九名 炭匠人三十名 梁山山城城丁軍三十名.”이라 하였다.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성절목의 시행에 의해 문경에 배정된 통영(統營) 소속 수군은 남고, 감영 소속 군보는 정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병영 소속의 군보 가운데 친아병, 혹은 아병 6명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발군(撥軍)과 봉수군 및 봉수군보를 모두 조령진으로 옮겨 소속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발군은 1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결국 수성 절목의 ①번 조목에 의해 확보될 조령산성 ‘산성작대군’의 1차 대상자는 당초 상주진 소속의 문경현 속오군 773명(당초 3초에 4초를 더한 7초의 병력)과 보인(保人), 당초 우병영 소속이던 문경 관내 두 봉수(선암산봉수 및 탄항봉수)의 봉수군(봉수 1개소 당 봉군 25명씩 2곳) 50명과 봉수군 보인 150인(보 3인씩을 배정한 75인씩 2곳)으로 봉수 군보 도합 200인, 그리고 군사교통망 운영을 하는 파발과 관련된 발군 70명 내외를 조령진 소속으로 이속시켜 성립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성작대군’은 다음과 같은 병력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는 수성절목에 새로 나오는 인원)

- ★ 겸 수성장: 문경현감(음직 6품)
- ★ 겸 수성중군: 조령진 별장(무관 4품) ; 거느리는 부하[率下]
- ◎ 진리(鎭吏) 9인에게 보인(保人) 2명씩을 공사노비[公私賤]에서 지급 보강(☆),
- ◎ 지인(知印) 5인, ○ 사령(使令) 21명에게 보인(保人) 2명씩을 공사노비[公私賤]에서 지급 보강(☆), ◇종[奴] 1口.
- ★ 속오군 (속오 7초)
- ◎ 천총(千總) 1인
- ◎ 파총(把總) 2인
- ◎ 초관(哨官) 7인 속오군 773명
- ★ 발군(撥軍) 69명
- ★ 봉수군 50명 봉수군 보인 150명

- ☆ 성내 거민작대 약 300명 내외
- ☆ 성내 승려작대 4~50명(48명)
- ☆ 수첩군관 작대 남포군 300여명을 늘려 500명으로 하고, 화병(火兵) 50명 추가

이처럼 당초의 감영과 우병영에서 관리하던 문경현 소속 군병을 독진이 된 조령진으로 소속을 변경시킨 대가로 순영과 병영에서 다른 명목의 군인을 가정(加定)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가정(加定)을 못하게 한 근거는 위의 내용 가운데 ‘상주진 소속의 보군(步軍)은 원수(元數)가 이미 많아’가 이유였다.

산성의 운영을 위한 전속군병 속읍은 당초 문경현 뿐이었다. 당초 상주진 소속이던 속오군 3초에 4초를 더 증액하여 문경 속오 7초만 조령진으로 전속시켜 조령산성의 ‘산성작대군’ 조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조령진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점차 전속 군병을 확충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함창현의 속오군을 전속케 하고, 이어 19세기 말에 이르러 조령진의 방어망은 더욱 보강되었다.<sup>31)</sup> 1893년부터 1894년까지 잠시이긴 했으나, 문경현이 도호부로 승격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 함창현의 속오군이 조령진에 포함된 기록은 읍지에서 확인된다. 즉, 『영남읍지』 21책의 「문경읍지」와 「용궁현읍지」, 「함창읍사례」 그리고 같은 책 12책의 「예천군읍지」와 제8책의 「상주목읍사례」에 나타난 조령산성 소속의 군병에 관한 내용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기준 조령진에 소속된 병력

- 관성장(管城將) 문경도호부사 솔하  
좌수 1인, 군관 7인, 인리 26인, 지인 2인, 사령 17명, 군퇴 13명, 관노 7구, 비(婢) 2구.

31) 조령진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는 것은 고종 때에 이르러 이필제(李弼濟) 사건 등이 일어나자 토포(討捕)의 요충으로 되고, 한편으로는 조령 설관(設關) 이후 그 서쪽으로 여러 교통로가 열려 교통로의 차단과 감시를 위해 보다 남쪽의 석현성 진남문이 1893년 축조되는 것과 관계있다. 석현성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서가 있다. 차용걸·조순홍, 『문경 석현성』 - 鎭南樓 시굴조사·石峴城 지표조사 -, 문경시·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 수성중군 조령별장 솔하  
 군관 2인, 군기감관 1인, 수첩군관 300인, 진리 4인, 지인 4인, 사령 7명, 노(奴) 8구.
- ☆ 문경·함창·용궁·예천 4읍 속오군  
 문경 속오군 764명, 함창 편오군(編伍軍) 531명, 용궁 편오군 480명, 예천의 천총1인, 파총 8인, 기패관15인, 보병(步兵) 수솔(隨率) 포함 959명.

이들 군역 전체를 평상시에 관성장을 겸한 문경도호부사가 관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갑오개혁 이전의 조령진은 「문경부사례책」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군병 자원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난다.<sup>32)</sup>

천총	1인
파총	2인
지구관	2인
초관	9인(2인은 함창 소속)
기패관	29인(4인은 함창 소속)
속오군	1,027명(본읍 767명, 함창 228명, 승군 32명)
수첩군관	550명(본읍 55명, 함창 33명, 용궁 47명, 예천 104명, 상주 375명)
군마(軍馬)	61필 (본읍 45필, 함창 16필)
요성참(聊城站) 발장	1인 발군(撥軍) 45명
태탄참(太灘站) <sup>33)</sup> 발장	1인 발군(撥軍) 45명
선암참봉수별장	2인 봉군(烽軍) 25명 봉보(烽保) 75명
탄향참봉수별장	2인 봉군(烽軍) 25명 봉보(烽保) 75명
포장(砲將)	1인 포군(砲軍) 50명 (30명 조령 주둔, 20명 문경읍 주둔)

32) 『영남읍지』 21책 「聞慶府事例冊」 軍摠.

33) 太灘은 犬灘의 誤記이다.

## 다. 산성 내부 주민과 승려의 작대

속오군 중심의 조령진 군병이 그대로 ‘산성작대군’이 될 수는 없었다. 속오군 편성의 대다수는 조령산성 내부에 거주하지 않는 인근지역 주민들이었다. 그러므로 항시 거주하는 성안에 사는 주민들, 즉 성내 거주자들을 편성하는 병력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된 절목의 ②번 조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안에 경작할만한 넓은 들이 없으니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곳이 아니다. 다만 길이 서울로 통하여 끊임없이 오가는 나그네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만 손님 접대하여 먹을 것을 해주고 살아가는 터인 바, 만약 연호(煙戶)의 부역(賦役)을 정해 놓은 것 이외로 더 [부역을]부과하게 되면 흩어져 떠나버릴 염려가 있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성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호잡역을 부과해 침해하는 등의 일을 일체 없애거나 덜어주고, 그들로 부대를 만들어 활쏘기와 대포 쏘는 기술을 연습하게 하여서, 성을 지켜야 되는 급한 상황이 되면 별장의 수하 병졸이 되게 한다.”<sup>34)</sup>

성내 거주 주민들을 단속하여 작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언급은 없다.

굳이 당시 성내 거주자의 인적 대상을 찾는다면 지리지에 나타난 당시 성내 호구 수 자료가 있다.<sup>35)</sup> 그런가하면 1750년대 초반의 『해동지도』에서는 성내 주민이 300호이고 이들은 모두 복호(復戶)되는 존재란 기록이 있다.<sup>36)</sup>

34)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35) 조령산성 성안에 살던 사람들은 기묘장적(1750년)으로 된 이영기 소장본 「문경현지」의 坊里에 의하면 성안은 草谷坊으로 6개 리가 속해 있었는데, 鎭安里·各氏洞里·要光院里·下草谷里·草谷里·桐華院里이며 編戶 222호, 남자 363口, 여자 355口라 하였다. 이러한 숫자는 문경현 전체의 호수(약 3,466호, 인구 10,244명 내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내지 7%에 해당한 것이었다.

36)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 「鳥嶺城」의 기록에는 民戶三百이라 하고 細注로 ‘以山城守護 盡爲復戶’라 하였고, 또 “募民六十餘戶 居城內.”라 하였다. 같

절목의 이 조목은 오히려 ‘산성작대군’을 조직하는 조건으로 연호잡역의 견면(蠲免)과 평소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1759년 기준 편호(編戶) 222호에 많아야 남자인구가 15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정(男丁)을 나타낸 것이라 볼 경우 최대한 363명의 작대(作隊)가 가능한 정도의 성내 거주자, 또 다른 지도 자료의 기록에서 보면 300여 호에서 1인씩의 장정을 작대하여도 그 숫자가 300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자료에는 모민(募民) 60여 호가 성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산성작대의 자원으로 이들 모민이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성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부대를 조직해 그들이 사는 바로 그곳을 지키는 성격의 것이었고, 앞의 ①번 조목에서의 ‘춘추조련’과도 뗄 수 없이 관련되어야 하며, 대부분은 이미 지역 군병인 속오군에 포함되거나 그 보인이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성내 주민들 가운데는 실제로 군역자원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산성작대군의 조직 자원으로 파악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산성 안에 사는 주민들은 원(院; 桐華院)과 사찰 및 암자의 승려도 포함되었다. 다음의 조목은 조선후기 경영된 산성들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승군(僧軍) 작대, 혹은 승인(僧人) 작대와 관련되며, 이와 관련된 ③조목은 산성수호사찰의 승려들을 묶어 부대를 편성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성안에 있는 혜국사(惠國寺)와 용화사(龍華寺)의 두 절에 사는 중이 4,500인이 되니 만약 급한 경보가 있으면 편오(編伍)의 대열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무릇 승려에게 부과되는 부역을 일체 견감(蠲減)시키는 대신 이들을 묶어 대오(隊伍)를 짓게 하고[作隊], 활쏘기 기술을 연습케 하여 봄과 가을마다

은 지도책의 「聞慶縣」에는 元戶 5,033호이고, 인구는 남자가 9,009口, 여자 10,567口라 하였다. 이들 戶口를 보면 위의 다른 지리지 자료의 편호(編戶)에 기록된 남녀 인구는 오히려 정(丁)에 해당되는 유역(有役)자원의 수로 여겨진다.

조련(操鍊)할 때 활쏘기 시합을 벌여 상과 벌을 주게 한다. 강압에 못 이겨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있을 때는 수성장(守戍)이 이문(移文)하여 쇠환(刷還)한다.”<sup>37)</sup>

성안에 두 사찰이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의 기록에는 혜국사(惠國寺)가 있고, 그 사찰 소속의 암자(菴子) 3곳이 있었다고 하여, 암자의 이름으로 안적(安寂), 은선(隱仙), 용화(龍華)를 기록하였다.<sup>38)</sup> 이 성안에 사찰이 들어선 것은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다. 기록으로 보아 숙종 34년 축성 시기에 이루어진 의도적인 사찰 창건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17세기의 지리지인 『동국여지』 단계에는 조령에 사찰이 있다는 기록이 없다가, 이후 “조령진 문경현” 등의 이름으로 된 읍지에서 처음으로 산성과 함께 그 성안의 사찰과 암자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sup>39)</sup>

조선 후기 운영된 산성들에 공통되는 산성운영의 한 방식이자 불교정책의 하나였던 산성 수호 사찰은 국가 수호의 의지와 관련된 유교적 이름의 사찰이 많다는 특성이 드러나는데, 조령산성의 경우에도 그랬다. 암자의 이름은 다분히 산중의 경관과 어울리듯 신선과 관련되는 이름과 불교 이름이 붙은 암자가 있었으며, 승려들의 다른 잡역을 견감하여 산성 내의 사찰이 가지는 현실적 입지를 보장하여 산성 유지 경영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성 내의 사찰 소속 승려로서 일정한 연령층 내의 사람까지 승군으로 작대하여 결국 ‘산성작대군’의 큰 범주에

37)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38) 『여지도서』 경상도 조령진 문경현 사찰에 新增으로 惠國寺를 ‘在山城內 屬菴有三 曰安寂隱仙龍華’라 하였다.

39) 신사국 수택본 읍지의 사찰에서 惠國寺의 기록이 있고, 이영기소장본 문경현지 사찰에서는 新增으로 惠國寺를 설명하면서 ‘在山城內 屬岩有三 曰安寂隱仙龍華’라 하여 惠國寺와 그 소속 암자 3곳을 기록한 것에 龍華의 이름이 보인다. 또 계명대소장본 문경군읍지의 사찰에서는 惠國寺를 ‘在鳥嶺山城內屬菴有三曰安寂隱仙龍華’라 하였다. 신만증 교정본 문경현지 佛宇의 新增된 惠國寺에는 ‘在鳥嶺城內 卽高麗太祖所勅普濟菴’이라 하였다.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조령산성 성안의 사찰은 이후의 기록에서는 혜국사만 나타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현재 남은 조선후기의 지도(地圖)들에서는 산성 내부 계곡 동쪽에 혜국사와 그 뒤로 은적암과 우측으로 올라 안적암이 그려지고, 더욱 북쪽으로 능선 너머 어류성 옛터의 서쪽에 보제사, 계곡 서쪽으로 산성창과 별장청 능선 너머에 용화사가 그려진 것이 있다.<sup>41)</sup> 결국 혜국사와 그 휘하의 암자들을 포함하여 승려들로 작대한 승군이 조령산성의 산성작대군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규모가 앞의 조목에서 4-50인 규모라 한 것과 48인의 승려가 있다는 지도의 기록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사찰과 암자가 1사 3암, 3사 2암 등으로 기록 마다 차이가 있다. 이곳 사찰에 사는 승려들이 군사적인 대오를 구성하게 되었으나, 그 규모가 대략 속오 3-4대(隊) 즉, 1기(旗) 남짓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산성에서 총섭(總攝)이나 승장(僧將) 등의 명칭이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 라. 수첩군관과 지휘관 관련규정

다음으로는 수첩군관의 작령(作領)과 작대(作隊)에 따른 증액(增額)과 화병(火兵)의 첨설(添設)에 관한 내용의 ⑥번 조목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 『경상도읍지』 16책 「문경현읍지」 사찰에 惠國寺를 “在鳥嶺城內”라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혜국사와 용화사 두 사찰과 암자가 있다가, 혜국사 위주로 재편되어 혜국사가 대표적인 산성 수호 사찰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1) 1750년대 중반의 것으로 서울대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의 「鳥嶺城」에는 그림 이외에 사찰의 승려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즉, 普濟寺 9명, 惠谷寺 22명, 龍化寺 6명, 隱善菴 4명, 安靜菴 7명으로 모두 48명의 승려가 있다고 하였다. 사찰이 그려진 18세기 중엽의 『영남지도』, 「聞慶縣」(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경우는 사찰 이름이 普濟寺, 惠國寺, 隱仙菴, 安寂菴, 龍華寺가 동일한 위치에 모두 그려져 있다. 문경세계박물관, 『옛 지도로 보는 문경과 백두대간』, 2004. 참조.

“산성에 소속된 상주·함창·용궁·예천·문경의 다섯 읍의 수첩군관(守堞軍官) 300여명은 급할 때 힘을 얻기에 충분하니, 해당 고을에 거둬 신칙(申飭)하여 이들을 다른 잡역에 동원치 못하게 한다. 이들로 통솔의 대오를 이루게 하여 사격기술을 가르치고 연습시켜, 봄과 가을의 조련(操鍊) 때 사격 시험을 실시해 상과 벌을 주게 한다. 이들은 베를 내고(納布) 부역을 대신하는 무리에 불과해 각 고을에서는 긴요함이 덜하나, 산성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소속된 다섯 고을에서 더욱 가정(加定)해 500명의 숫자를 채우게 한다. 수첩군관 10명마다 화병(火兵) 1명씩이 되게 수첩군관 수에 따라 화병을 고을에 배정하여 50명을 채우게 하고, 이들과까지 모아 한꺼번에 조련시켜 성을 지킬 급한 상황 때에 동원함에 대비하도록 한다.”<sup>42)</sup>

수첩군관은 납포(納布)로 군역을 대신하는 지방의 군역자원이었다. 이들 수첩군관이 ‘산성에 소속된 다섯 고을’에 존재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산성에 소속된’이란 말은 수첩군관에 한정된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조령산성의 수첩군관이 수성 절목 성립 이전에는 사실상 군향속읍(軍餉屬邑)인 다섯 고을에 배정된 납포(納布), 혹은 납전(納錢) 군병이었으므로, 이들을 배정한 고을들을 속읍이라 하여 일단 군향속읍에 배정된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sup>43)</sup>

한편 수성 절목의 ‘산성작대군’과 결부시켜 이해하면, 수첩군관이란 명칭 자체가 산성의 성첩(城堞)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군병의 의미가 있으며, 또 교습(敎習)과 성조(城操)에 참여하도록 조직화하여 실질적인

42)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43) 『여지도서』 경상도 조령진 문경현 鎭堡에서 조령진 별장에 대한 설명에서 군관 300人이라 한 것은 곧 수첩군관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조령산성의 수첩군관이 고을에 존재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는 『경상도읍지』 17책 「함창현 읍지」 군역의 “鳥嶺鎭將官六名 守堞軍官四十五名 東伍軍二百十六名 卜馬軍十四名.”이라 한 것이 있고, 19세기 말의 기록에 그 전체 규모가 나타난다. 『영남읍지』 8책, 「상주목읍사례」 군총의 각양 보솔군에서는 조령진 소속 수첩군관이 146명, 火兵 8명이고, 조령진 수첩군관은 1명당 9전씩, 화병은 1냥씩 봄과 가을마다 징수한 내용이 있고, 21책 「문경부사례성책」의 군총에는 조령산성의 수첩군관 550명(상주 375명, 예천 104명, 용궁 47명, 함창 33명, 55명 문경)이라 하였다. 이전의 읍지에서는 시기마다 인원수가 다르게 파악되어 있다.

전투능력을 배양하려던 대상이 되었으나, 그 실제 양상은 알기 어렵다. 수성 절목의 내용에는 수첩군관을 기초로 하여 10명에 1명씩의 화병(火兵)을 증치하는 내용이 있다. 경제적 부담력 확보의 목표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균역법(均役法)의 실시와 함께 양역 변동의 일환으로 지방에서 성장한 일정한 재력이 있는 면역신분층으로서의 납포(納布)로 균역을 대신하는 균역자원인데, 이들에게 적어도 춘추의 성조(城操)나 조점(操點)에 동원하고, 평상시 훈련 내지 스스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유사시 산성방어군의 일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이를 관철하는 규정이 수성 절목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조목은 수첩군관 자원의 전투력 중강과 그 숫자의 증액, 화병의 침설로 더욱 많은 숫자의 훈련된 군병의 확보를 목표로 하였던 조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성장과 중군에 관련된 ⑨번과 ⑩번의 훈련과 유사시의 지휘관 관련 조목이다. 평상시에 문경현감과 조령산성 별장이지만 매년 춘추로 거행하는 성조(城操)의 경우와 유사시에는 수성장과 수성중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수성장의 경우는 그 위엄(威嚴)에 따른 의례(儀禮)를 생각해 공사천에서 군뢰 30인을 정급(定給)한다는 내용이 있다.<sup>44)</sup> 또 실제 항시 성내에 있으면서 단속하는 별장의 임무에 비취 그 솔하(率下)를 보완하였는데, 별장이 거느리는 하인들이 대개는 성안의 주막(酒幕)을 근거로 생활하는 무리라서 보호하는 조치가 없으면 흩어져 달아날까 염려되므로, 각 고을의 아전과 사령들에게 모두 보인(保人)이 있던 것처럼, 이곳 또한 각 고을의 사례를 본받아 경내의 공사천들 가운데 무역자(無役者) 각각 2명씩을 보인으로 정해 두는 일을 수성장에게 맡기었다.<sup>45)</sup>

44)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45)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이처럼 마련된 산성운영 관련 규정들은 보기에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다 단순하게 군역 자원 자체의 배정을 조정하고 일부 증액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절목의 12가지 조목 가운데 거의 절반인 6개 조목에 걸쳐 나타난 산성의 군병(軍兵) 조직과 그 구성, 지휘 등에 대한 절목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 분석해 본 결과 조령산성 수비의 핵심 군보자원은 문경고를 소속의 속오군 7초 병력이었다. 조령산성은 산세가 험하고 성벽이 3겹으로 되어 지키기 위한 군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제까지 감영과 병영 등 도내 상급 아문에 소속 배정된 군보를 되도록 조령산성을 지키는 독자적인 진 체제를 갖추려고 ‘산성작대군’을 조직하여 수비력을 보강하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타나 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은 정치와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된 19세기 말에 이르러 실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잘 달성되어갔으며, 그 결과 전통적인 지방군 제도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경도호부로의 짧은 승격의 시기에 수성장을 관성장으로 부르는 명칭상의 승격도 있었다.

조령산성의 ‘산성작대군’을 비롯한 군병은 개인적인 전투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습 내지 조련을 받아야 한다고 절목 내에 규정이 있었다. 그들은 봄과 가을마다 유사시 산성을 지키는 매뉴얼에 따라 문경현감을 수성장으로 하고, 조령진 별장을 수성중군으로 삼아 소속된 군병이 모여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개별적 전투능력을 시험하는 등, 집단적 수비연습(城擲)을 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으로 별도의 성조(城擲)절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매년 봄과 가을에 상근하지 않는 예비 병력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였음은 분명하다.

조령산성을 수비하는 임무를 겸한 단독 지역 부대의 최고 지휘부는 보다 상급 아문인 경상 우병영과 순영이 있었다. 조령산성 방어의 핵심으로 ‘산성작대군’의 주된 병력은 천총·파총·초관 등의 지휘관이 지휘하도록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속오군을 주축으로 조직화되었다. 거기에는

더하여 성내 거주자를 작대하고, 성내 사찰의 승려를 작대한 조직이 ‘산성작대군’의 실체였다. 신분적 경제적 우월한 부유층으로 구성된 인근 5개 고을 거주자에서 모입(募入)되는 수첩군관도 부대로 조직되었다. 이들을 더욱 확보하여 당초 300인의 수첩군관은 200명을 증원하고, 도합 500인의 수첩군관의 10%에 해당된 50인의 화병(火兵)을 확충하여 이들까지 부대로 조직하는 조치가 포함된 것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종래부터 운영되던 군사통신 부대인 봉수군과 그들의 보인, 군사적 연락을 담당한 발군(撥軍) 등은 경상우도 병영 소속에서 새로 독진이 된 조령산성 소속으로 조직이 이관된 것에 불과하였다.

### 3. 산성운영의 물적 자원과 그 운용

조령진의 여러 시설, 특히 산성의 유지와 관련된 성벽 수리와 여장 보수 등의 경비 및 이에 소용되는 자원의 취득과 활용, 거기에 소용되는 노동력 징발과 보수지급 등의 전반적인 물적 자원 확보와 산림자원의 보호 및 노동력의 부당한 각출 등을 금하는 조목도 수성 절목에 포함되었다.

소속 군병의 유지와 관련된 경제적 기반을 규정한 조목은 ④번 조목(산창을 유지하기 위한 소금과 된장 등의 영속적 조달을 위한 조목), ⑦번 조목(순영의 돈 1,000량을 유치하여 규식대로 이자를 불리는 일), ⑪번 조목의 군향미곡 10,000여석의 유지를 위한 조적(糶糶), ⑧번 조목(성첩의 수리와 보수에 대한 임금 지불)의 역군(役軍), ⑤번의 금화(禁火) 및 금벌(禁伐), ⑫번 조목의 남여군(籃輿軍)책출의 금지 조항 등이 산성 운영의 물적 자원과 관련된 조목들이다.

## 가. 성벽과 여장의 보수에 필요한 자원

우선 산성의 성첩을 유지 보수하는 일과 관련한 ⑧번 조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벽과 여장의 무너진 곳은 별장이 날낱이 돌아다니면서 살펴, (무너진 곳이) 짧으면 성안에 사는 주민을 시켜 성벽에 오를 때마다 고치게 하고, 크면 수성장에게 보고하여 수성장이 (왜 무너졌는지) 적간(摘奸)한 후, (무너진 부분의 길이, 너비 등의) 보수(步數)를 자[尺]로 재어 감영에 보고해서 수축에 관련된 (예산 등의 산출) 근거로 삼게 한다. (수축에 소용되는) 공장(工匠)과 인부[役夫]의 사역에 필요한 양식과 임금[糧料]은 산성 창고[山倉]의 이자로 받는 쌀[耗米]을 낱자 당 얼마로 계산하여 주며, (소용되는) 쇠[鐵]와 (그것을 녹이는데 필요한) 숯[炭] 등의 가격은 이자로 받은 돈[利錢]으로 계산하고, 베[布]로 쓸 경우에는 경상도에서 구관하는 사군목(射軍木)을 거두어들일 양을 헤아려 (거기서)사용하게 하며, 역군(役軍)은 모두 성을 쌓을 때의 절목에 의거하여 속읍(屬邑)의 승군(僧軍)들이 일을 하게 한다.”<sup>46)</sup>

이 조목에서 당초 축성과 관련된 절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절목에 규정된 내용은 새로운 절목 조목에 상세한 규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준용되는 것이었다.

축성 당시의 절목이란 아마도 숙종 때 조령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할 당시인 1707년부터 1708(숙종 34)년까지 공사할 때의 역군 동원과 경비조달 관련인 것이라 하겠다. 이 축성당시의 절목 내용은 전해오는 바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시의 기록 가운데 일부의 사정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변사등록』 숙종 34년[무자년] 1708년 8월

46)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조령산성의 축성에도 승려들이 役軍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당시 절목의 내용은 알 수 없다. 승군을 동원하여 수축할 때 役軍으로 동원할 자원이 있다는 사실은 『경상도읍지』 20책 「룡궁현읍지」 戶口에서 元戶 2,866戶, 人口 12,197口(男丁 6,872口, 女丁 5,325口)라 하고 僧戶 43戶(僧丁 64口)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용궁현은 조령산성의 수첩군관과 군향속읍이기도 하였다.

초여드레 기록에는, 당시 이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 8월 초닷새에 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얻어낸 기록인데, 그중 ‘새재 아래 고개의 험준한 곳을 막아 지킴 [鳥嶺以下 嶺隘防守]’의 내용이 있다.

내용 가운데는 ‘길을 막아 관문을 둠 [遮道設關]’을 하면 물력(物力)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며, ‘봄에 문경·상주·함창의 세 고을 대동작미(大同作米)를 서울로 운반하지 않고, 해당 고을에 머물러 보관한[留置] 것을 민원에 의해 돈으로 바꾼[作錢] 것이 있으면 먼저 가져다 쓰도록’ 계획하여 축성하는 경비의 조달을 허락받은 내용이 있다.<sup>47)</sup>

‘시작이 반이다’란 속담까지 이끌어 추진한 조령산성 축조에 소요되는 물력조달에는 이미 비축된 대동작전(大同作錢)이 사용되었다. 또 역부의 조발 충당에는 모두 승병을 동원하는 내용 등이 상세히 규정된 축성시의 절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축성이 완료된 이후의 유지와 보수 등 성첩 수축에 소용되는 물력과 관련된 내용의 첫째는 조령산성이 자력으로 물력을 내는 이른바 ‘산성창고의 곡식 이자[山倉耗穀]’의 존재가 주목된다. 산창은 산성창고로서 이른바 군향속읍들의 임난(臨難) 때 들어와서 보전(入保)하기 위해 평시에 마련한 군량 창고다. 창고에 모아들인 군향 곡식을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조적(糶糶)하면서 모곡(耗穀)을 붙여 징수하여 한편으로는 운영 재원을 삼거나 자연 소모 곡식을 보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오래된 곡식을 신곡(新穀)으로 갈아 보관했는데[改色], 곡식이 아닌 전(錢)과 포(布)로 바꾸는 작포(作布)와 작전(作錢)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위의 조목에 의하면 조령산성의 성첩 수리 때에는 그 비용이 베(布)로 지급될 경우에는 ‘경상감영에서 구관하는 사군목(射軍木)’을 사용토록 되어 있다.<sup>48)</sup> 이 사군목은 1735(영조 11)년 8월의 『삼남경기작미절목』의

47) 『비변사등록』 숙종 34년 무자 8월 8일 “行吏曹判書李寅燁請對入侍時 行吏曹判書李所啓…”

48)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기해 정월 15일의 “右議政李健命又所達 嶺南射軍木 自

끝에 제시된 「경외아문전목분정수목」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인 듯하다. 즉, 전(錢)과 목(木)의 값이 오르고, 쌀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상평(常平)의 취지에 맞도록 경기·충청·전라·경상의 4도 양역(良役) 대상자 가운데 중앙 각 군문과 각 관청, 지방의 조군(漕軍)과 수군(水軍) 등 2필(疋)씩 납부할 의무가 있는 양역 대상자들의 경우 쌀로 대신 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 때 京外 여러 아문에서 가지고 있는 포목 2,460同(1동은 50疋)과 전 8만 냥(兩)을 분정(分定)한 수목(數目)에는 경상도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 ① 영남 사군목(射軍木) 150동,
- ② 가산산성 전(錢) 2만 냥,
- ③ 통영 목(100동), 전 1만 냥,
- ④ 경상감영 목 100동.

등이 나타나 있다.<sup>49)</sup> 이 절목에서는 전국적으로 전(錢) 8만 냥과 목(木) 2,460동(同)을 합하여 모두 목 3,260동으로 도합 계상된 숫자의 거의 1/3이 넘는 1,200동이 경상도에 획정되었던 사실과, 각 도의 작미 가격이 달라 경기도는 배 1필에 쌀 8말, 공홍도[충청도]는 10말, 경상도와 전광도[전라도]는 12말씩으로 절정(折定)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1729(영조 5)년과 1734(영조 10)년에 시행된 기병과 보병의

---

備局句管 諸道設賑與城役時 及緊用處 或發賣 或許貸 而近來未成冊 多以未捧懸錄 此非民間未捧也 既捧之後 各邑或任意貸用 或先送於京衙門上納 以致數多捧 事極虛疎”에 의하면 매년 200여 동이 거둬지고, 비변사에서 구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흥과 축성할 때 등의 긴급한 용도에 사용할 때 발매(發賣)하거나 허대(許貸)되었다. 이런 성격의 것으로 關西의 遼軍木과 湖南의 休番木이란 명목의 군역 재원이 사용되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8년 임자 7월 19일에는 영남사군목 500여 동(同)인데, 비변사에서 구관하면서 해마다 사용하여 400여 동이 있다고 하고, 당초 경상감영 구관이던 것을 冥命恒 감사 때(1722) 비변사가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를 합법적으로 비변사에서 구관하기 위해 감사와 협의케 하였는데, 이후 그에 대한 절목이 이루어진 것인 듯하다.

49) 『비변사등록』 영조 11년 을묘 8월 19일 “三南京畿作米節目”의 「京外衙門錢木分定數目」.

보인들에 대한 군역 변동과정에서 있었던 작미(作米)에 이은 것으로, 남아 있던 병조 전 3만 냥 등에 대한 조치였다고 여겨지는데,<sup>50)</sup> 이러한 변동의 대상인 영남 사군목이 조령산성의 수축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으로 획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 나. 산성의 유지와 군량 확보

조령산성이 수축된 이후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일부는 감영 소속의 재정에서의 지원이었던 듯하다. 수성의 절목에는 순영전(巡營錢)이라 하여 순영 소속의 본전(本錢)을 문경현에 두도록 하고 이자를 거두는 내용의 ⑦번째 조목이 들어 있다.

“순영(巡營)의 돈[錢] 1천 냥을 문경에 두고 정해진 방식에 의해 이자를 거두도록 하고, 본영(本營, 즉 순영)에서 관리하되, 매 연말에 공용(公用)할 비율만큼 순영에 내고[會銀] 나머지를 문경에 준다. 염산(斂散; 거두고 나누어 줌)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혹은 잘못을 저지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매년 나누어 주는 일은 정월에 한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12월을 기한으로 한다. 그래서 다 거둬들인 후에 (장부를) 보내면 순영의 보좌하는 관리(감영의 都事, 中軍 등)가 회계 장부를 점검한 뒤에야 나누어 주도록 하며, 본 현[문경]의 좌수(座首)와 이방(吏房)을 감관(監官, 감독자)과 색리(色吏, 실무책임자)로 정해 그들로 하여금 (염산하는 일을) 거행케 한다.”<sup>52)</sup>

50) 『비변사등록』 영조 10년 갑인 10월 16일의 「作米節目」에서 총 10만 錢(경상도 4만, 전라도 4만, 충청도 2만)을 하삼도에서 작미한 것으로 배 1필을 2냥으로 계산하여 1,000동 어치(경상도 4백동, 전라도 4백동, 충청도 2백동)를 2필씩 내는 양역 대상에게 포목 대신 쌀로 내도록 물량을 획급한 것인데, 쌀의 가격이 산군(山郡)과 연해읍(沿海邑)에 차이가 있었을 것을 감안하였다.

51) 『비변사등록』 영조 11년 을묘 8월 19일 “三南京畿作米節目”의 절목 내용 중 ‘...山郡木産邑民情 欲以本木備納者 則不必勒令作米是白遣...’의 문구가 있어서 조령산성에 여러 명목으로 소속된 속읍의 경우는 대부분 山郡이었다고 보아 1년 전에 米賤木貴한 沿邑에 주로 시행하라는 것과 달리, 이번의 경우 山郡 지역으로 錢賤米貴한 곳에서 ‘勒令作米를 하지는 말라’ 하고 있다.

52)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慶尙道聞慶縣鳥嶺山城節目」의 해당 부분.

여러 세목(稅目) 가운데에서 순영에 납부해야 되는 전 1,000냥을 문경현에 머물러 두는[留置] 것이다. 그 세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조령산성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元會穀)이며 군자(軍資), 즉 군향 등의 밑천이 되었으므로, 그 관리도 감영에서 구관(句管)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고, 문경현의 향청 책임자인 좌수가 감독하고, 향리 가운데 이방(吏房)이 실무 책임을 맡아 보도록 규정한 것이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염산케 하여 거둔 이자를 연말에 회록하여 감영 소관을 덜고 나머지를 문경에 주는 확인 절차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sup>53)</sup> 정해진 규정이란 아마도 이자(利子)를 일정 비율 받아들이는 것과 쌀이나 다른 품목으로 내는 경우의 환산 비율 등의 실제적인 규칙이었을 것이며, 뒤에 불 환총(還摠)의 양상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1750년대 초반의 문경의 곡물에 대한 『해동지도』의 기록에 의하면 원회곡(元會穀)과 상진미(常賑米)가 6,291석이고, 각양 잡곡 10,585석 등인데, 이에 비해서 군향미는 2,032석, 군향태가 668석, 감영미 748석과 감영구관의 각양 잡곡 1,352석을 합해 감영 관련 각곡의 합은 2,100석, 저치미(儲置米) 678석과 사군작미(射軍作米) 29석 등 도합 21,635석 규모가 되었다.<sup>54)</sup> 이러한 규모는 아직 축성이 완료되고 수성 절목이 본격적으로 시행 운영되기 시작할 초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여지도서』에 보이는 1759[기묘]년 기준의 조적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53) 會錄은 『만기요람』 채용편 3에서 “還穀之有耗 …每元穀一石 取耗一斗五升 後遂有會錄之法 以十分其耗 公用其一 一升五合 謂之會錄 其九付之本邑 此所謂軍資穀也 或稱元會穀 或稱倉元穀 或稱戶曹穀 其實一也 至孝宗庚寅因持平金應祖疏 勅常平穀 五分四會錄以爲公用…”에서 보듯이 10%의 모곡에서 다시 10%를 공용으로 삼은 것을 會錄이라 하고, 이자의 나머지 90%를 본읍에 주는 것이 군자곡=원회곡=창원곡=호조곡이라 한다. 1分耗會錄, 3分耗會錄 등으로 점차 늘어나서 全耗會錄의 규칙도 있게 되었다.

54) 『해동지도』의 「聞慶縣」 穀物總數.

〈표 1〉 문경의 조적 규모(1759년 기묘식 기준)

조적 각곡 구분	수 량	각곡별 합계	비 고
元會穀 大小米	3,487섬 4말2되0홉8작		
雜穀	1,643섬 1말5되9홉9작	5,130섬 6말5되2홉4작	
賑恤色 大小米	5,273섬 7말9되2홉5작		
雜穀	9,153섬 12말9되9홉3작	14,327섬 5말9되1홉8작	
常平倉 大小米	507섬 4말8되4홉8작		
雜穀	1,633섬 14말7되4홉9작	2,141섬 4말5되9홉7작	
別會穀 大小米	921섬 14말3되5홉5작		
雜穀	238섬 10말9되2홉1작	1,160섬 10말2되7홉6작	
私賑穀 雜穀	203섬 3말1되4홉2작	203섬 3말1되4홉2작	
합계		22,963섬 4되5홉7작	

위의 〈표 1〉에서 중앙의 경사(京司)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감영 별회 각곡은 약 1천석을 조금 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이 부분은 급격히 증가하여 나타난다. 즉, 중앙 각사와 관련된 부분은 약 22,000여 석에 달하였는데, 이후 수성절목의 성립으로 진을 운영하면서 독자적 경영구조를 이루게 하는 한편, 성첩의 보수 등과 관련한 비변사 구관의 당초 사군목 등에 대한 부분은 비율이 줄어들고, 순영전(巡營錢) 1,000냥을 문경에 두고 이자를 늘인다는 절목의 규정에 따라, 감영 구관의 부분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경상도 환총은 1807년[丁卯總數]에 파악된 것이며, 『만기요람』에 실려 있는 수치이다. 이에 의하면 조령산성과 관련된 것으로는 경상도미 각곡을 호조구관 원회미(元會米), 비변사구관 사진미(私賑米) 및 군작미(軍作米) 등과 감영 구관의 별회미(別會米) 기타의 세 종류로 나타냈다. 모든 항목에 조령산성 관련 산성 군향미가 나타나 있다. 이를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55)</sup>

경상도 관련 환총(還摠) 전체에서 조령산성 관련 부분은 그 비율이

55) 『만기요람』 재용편 6, 還摠 慶尙道.

높은 것은 아니나, 산성 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보면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었다. 환총의 총액은 전국 8도(道) 4도(都)에서 9,995,599석으로 그 총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는데, 경상도가 2,302,277石으로 전체의 약 23%를 점하였다. 위의 표에서 호조 구관의 경우 조령산성미는 경상도의 다른 나머지 산성 5곳의 총액(10,107석)의 평균치 약 2,000석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표 2〉 1807년 경상도의 산성미 각곡 환총[還摠] 현황(『만기요람』에 의함)

구관 \ 산성	호조구관	비변사구관	감영구관	(합계)
조령산성	鳥嶺山城米 半留半分 4,407石 二留一分 4石	鳥嶺山城修城米, 補城米 半留半分 5,735石 二留一分 1,987石	鳥嶺山城米 半留半分 7,871石 二留一分 991石 盡分 7,399石	28,394石
가산산성	—	架山外城補城米, 藥丸米 半留半分 4,855石 盡分 1,815石	架山山城南北倉米 半留半分 12,375石 盡分 12,059石 改色 33石	31,137石
가산산성 별항미	—	—	半留半分 446石	446石
금정산성	—	東萊守城米 盡分 21,310石	金井山城米 半留半分 1,874石	23,184石
독용산성	—	錢作米 半留半分 549石	禿用山城米 盡分 265石	804石
금오산성	—	修城米 半留半分 15,262石 善山修城租 半留半分 2,016石	—	17,278石
성산산성	—	—	別會米 改色 68石	68石
축석산성	—	矗石山城米 盡分 2,000石	—	2,000石
화산축성미	—	半留半分 34石 盡分 397石	—	431石
좌병영산성미	—	半留半分 1,841石 盡分 11,721石	—	13,562石
5산성미	改色 10,107石	—	—	10,107石
합계	14,518石	69,522石	44,273石	128,273石

위의 표에서 순영 구관의 양곡 총 수는 16,261석으로 당초 감영구관의 별회곡 1,160석의 약 15배가 증가되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변사 구관의 경우는, 아마도 처음 조령산성 축조 때에 마련한 영남사군목 150동 등의 재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조적으로 늘여 온 것이라 여겨지는데, 감영 직속의 가산산성에 버금가도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즉, 많은 양의 환곡을 위해 많은 호구가 대상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많은 속읍이 필요했다. 예컨대 가산산성의 경우는 군향 및 조적을 위해 조령산성보다 많은 환곡 대상 고을인 조적속읍(糶糶屬邑)이 필요했다고 보아야 하며, 속읍이 적은 산성의 경우 많은 군향을 유지하면서 조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조령산성의 군향속읍과 조적속읍의 구체적 실상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위에서는 상납분의 유치와 감영분의 유치로 이식을 늘이는 부분이나, 실상 조령진 자체가 조적을 하여 늘이는 군향(軍餉)은 목표치가 1만여 석이나 되지만, 산성 별장이 관리하는 직접적인 조적 대상 군향은 중앙에서 구관하거나 감영 구관에 비해 매우 적은 분량으로 나타난다.

조령산성에 산성창고를 두고 그 유지와 개색(改色)을 위해 조적(糶糶)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규정을 정한 내용은 절목의 ⑪번째 조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산성 창고의 군량미가 장차 1만 여 석에 이를 것인데, 분유(分留 : 환곡할 곡식의 일정 분량을 나누어주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하고 조적(糶糶)하는 일을 각 읍의 감색(監色 : 실무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별장(別將)이 간섭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실로 산성을 축조하고 별장을 두는 본래의 뜻이 아니므로, 지금부터는 조적(糶糶)할 때에 별장(別將)이 개폐(開閉)를 담당하고, 각 읍의 감색(監色)이 합동하여 수봉(收捧)하도록 한다.”<sup>56)</sup>

56)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조령산성의 군향은 당초에 축성이 완료된 후 1710(숙종 36)년 상주와 문경, 함창 등의 1707년도 분 대동미 3,000석을 문경과 그 부근 고을들에 나누어 준 후, 가을 추수 때에 조령산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군향미로 삼게 함에서 비롯된 기록이 있다.<sup>57)</sup> 이후의 사례들을 보면 이 때 군향속음이 결정된 듯하며, 이들을 분급(分給)했던 고을들이 결국 조적속음이 되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경과 가까운 고을들로서 경상도 관내이므로 문경의 서남쪽에 있는 함창과 민호가 많은 상주, 그 동쪽으로 안동 진관 아래의 용궁과 예천까지 포함된 것이다.

군향미의 최종 비축할 목표치는 절목에서 보이는 약 1만석을 초과하는 정도를 목표로 했을 것이다. 그 확보 방안은 전적으로 조적(糶糶)에 의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적은 특히 군향(軍餉)의 경우 일반적 인 환곡(還穀)과 달리 비록 흉년이 들어도[歉歲] 다음 해로 물려 징수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sup>58)</sup> 그러므로 먼 고을의 백성들에게 분급하여 수봉하기 어려웠고, 특히 산성 내부의 산창까지 운반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 해서 평지에 자리한 평지창고[平倉]에 수납할 경우에도 특히 허락에 까다로운 절차를 두어 해이함을 막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조적의 물량에서 산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으나, 그만큼 ‘정퇴(停退) 불가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므로 그 관리 역시 철저한 규제를 하였다.

위의 절목 조목은 5읍(상주·함창·용궁·예천·문경)의 감색들이 군량 곡식의 조적(糶糶)을 관리하던 상태로부터 산성 내부인 초곡성(草谷城) 안에 산성창고가 자리하게 되자 산성 책임자인 별장이 산창의 열고 닫는 일을 맡아 책임지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군향속음인

57)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경인 4월 12일의 判敦寧府事閔鎮厚 行戶曹判書李仁晔…(鎮厚曰)…“又所啓 尙州丁亥條大同報本之米三千石 則分給聞慶附近各邑 待秋收納 烏嶺山城 以作軍餉 其餘米四十餘同 輸納京廳之意敢達 上曰依爲之.”

58) 『만기요람』 재용편 3, 조적 “餉穀糶糶之法 亦如他穀 而以其兵食所重 故稱以餉穀 以別於還穀 雖遇歉歲 不許停退 與諸山城餉穀 地方如值凶荒 則爲紓民力 或許捧留 邑倉 亦須觀察使啓聞 然後乃施.” 군향은 흉년에도 미루지 않으며 산성군량은 흉년일 때 조금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산창이 아닌 읍창에 수납할 때도 반드시 관찰사가 중앙에 아뢰어 허가를 얻은 다음에야 가능하였다.

5읍에 각기 차정(差定)된 군향속읍 감색들을 조령산성 별장이 함께 관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었다.

이 기록과 읍지의 기록을 종합하면 군향속읍은 곧 조적속읍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산창을 둔 속읍에 대한 기록이 『여지도서』에서는 문경현의 경우만 확인되지만, 이후의 다른 읍지 내지 읍사례 등의 기록들에 의해 5읍 모두가 산성창고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군향의 조적 물량에 대한 것으로는 「문경현지」에서 다음과 같이 조적 관련 기록이 있음이 확인된다.<sup>60)</sup> 이에 근거하면 1759년 당시 문경현 소속 군량은 쌀 951석1되3홑3작, 콩 147석8말1되1홑1작이어서 각곡 합계는 1,108석8말2되4홑4작이었다. 이후 군량은 목적인 바와 같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은 듯하다.<sup>61)</sup> 이런 현상은 19세기 전반에

59) 『여지도서』 경상도 조령진 문경현 창고 山城倉에는 ‘在縣西北十里’라 하였으나, 1832년의 『경상도읍지』 16책 「문경현읍지」 창고에서는 山城倉을 ‘在草谷城內’라 하였고, 나머지 고을들은 糶糴에서만 조령산성 군향미를 기록하고 창고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다. 1860년대 기준인 『대동지지』 권 9, 문경 창고의 山城倉에서는 ‘在主屹關內’라 하고, 같은 책 함창의 창고 山倉에는 ‘在聞慶之鳥嶺山城’, 같은 책 권8 예천의 창고 山倉에서는 ‘在聞慶鳥嶺山城’, 용궁의 창고 山倉에서는 ‘在聞慶之鳥嶺山城’이라 하였으므로 실제로 산성 내에 창고가 있었다. 상주를 제외한 4개 군향속읍의 산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71년을 기준한 내용인 『영남읍지』 8책 「문경현지」 창고에서는 東倉을 ‘在山城內’라 하고 나머지 고을들의 산성 창고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상주의 경우에도 鳥嶺倉을 운영했음을 1894년 자료 기준의 『영남읍지』 8책 「尙州牧邑事例」의 人吏廳房任에서 鳥嶺倉色 2인이 있다고 기록된 바가 있어 확인할 수 있다.

60) 「문경현지」 - 이영기소장본 -, 申厚湜 편, 『集註 聞慶史』, 300쪽, 그리고 계명대 소장본 「문경군읍지」, 申厚湜 편, 『集註 聞慶史』, 356쪽에서는 동일하게 糶糴에서 ‘山城中軍餉’이라 하여 ‘大小米’, 혹은 ‘大米’ 九百五十一石一升三合三舍, 太一百四十七石八斗一升一合一舍, 醬五十石이 기록되고, 다른 창고의 것들과 함께 말미에, ‘己卯歲末摠’이란 기록과 ‘自十月開倉 至十二月封倉’이라 하였다. 여기의 己卯歲는 1759(영조 35)년으로 판단된다.

61) 위의 책에 실린 신만증 교정본 「문경현지」, 위의 책 400~401쪽에서는 東倉을 ‘在山城內’라 하고 糶糴에서는 ‘守城所大米’가 一千九百七十一石四斗七升八合九舍이고, ‘城役錢作米’가 三百四十四石三斗八升九合八舍라 하였고, 또 ‘鳥嶺山城軍餉’이라 하여 쌀(米) 五百八十八石一斗三升六舍와 콩(太) 二百一石一斗二升二合五舍에 대해서 ‘并戊申數分在四倉’이라 하여 조적을 하는 여러 명목의 곡식이 司倉·加恩倉·虎溪倉과 산성에 있는 東倉에 나누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 1788(정조 12, 戊申)년, 혹은 1848(헌종 14)년의 상황이라 여겨진다.

이러면서도 큰 변화는 없었던 듯하다.<sup>62)</sup> 즉, 1832년의 『경상도읍지』에서는 1831년의 신묘식년(辛卯式年)의 자료를 기준한 군량, 1871년의 『영남읍지』에서는 1870년 경오식년(庚午式年)의 자료가 기준 된 기록이고, 1895년의 『영남읍지』는 1894년 갑오식년(甲午式年)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이 작성되었는데, 이들에 나타난 19세기 조령산성 군량 곡식의 실태 변화 양상은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이에 의하면 실제 산성 내부의 창고에 보관된 군량은 그리 많은 수량이 아니었다.

<표 3> 조령산성 군량의 실태 변화

자료 속음	1831(신묘식) 『경상도읍지』	1870(경오식) 『영남읍지』	1894(갑오식) 『영남읍지』
문경	軍餉各穀 837石4斗6升8合9勺	(1845년) 軍餉米547石1斗2合9勺 太191石7斗8升8合8勺	米 547石1斗2合9勺 太191石7斗8升8合8勺
함창	鳥嶺山城軍餉米 375石11斗	鳥嶺軍餉米 300石	-
상주	-	-	鳥嶺倉色 2人 軍官守堞錢 (246名, 9錢씩 春秋)
용궁	鳥嶺山城米 81石8升3合2勺	-	-
예천	鳥嶺山米 374石9斗6刀9合6勺	-	鳥嶺山米 374石9斗6刀9合6勺

#### 다. 부식(副食)의 확보와 유지 규정

다음으로는 산성창고(山倉)의 운영에 따르는 부식으로 장(醬)을 담그고 간장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조목이다. 이는 산성 운영의 실질적인 경제와 관련된다. 산성에서 장을 담근 수량과 그 확보책, 신선도의 유지를 위한 개색(改色)의 방법이 규정된 조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 『경상도읍지』 16책, 「문경현읍지」의 창고에서는 山城倉이 草谷城(외성으로 제일 관문) 안에 있다고 하고, 糶糶에서는 문경현에서 하는 조식의 총규모가 13,792석 8말3되2홉4작인데, 그 안에서 軍餉各穀은 837석4말6되8홉9작이라 하고, 가장 큰 규모인 軍作各穀이 4,504석14말9되8홉9작이라 하였다.

“산창(山倉)에 이미 군량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금[鹽]과 장[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찍 준비해놓은 메주로 담근 된장[沈醬] 20섬으로는 정말 모자라므로, 지금부터 이후 매년 산성의 모곡(耗穀)으로 받은 콩에서 10석씩을 털어내어[除出] 메주를 쑤고, 모미(耗米)로 소금[鹽]을 사들여 장을 담그는데, 50석이 될 때까지 한다. 매년 절반씩을 성안에 사는 주민에게 나누어주고 새것으로 바꿔 받도록[改色] 하는데, 도로 받아들일 때[還奉] 만약 나뉘 준 장만큼 납부케[準納] 하면, 받고 싶은 주민이 없을 것이니, 장 한 섬[醬一石] 대신 메주 콩[燻造] 1섬씩 받아들이고, 소금은 모미(耗米)로 값을 주고 사들여[換買] 다시 (장을) 담그게 한다.”<sup>63)</sup>

조령산성의 침장(沈醬)속음이 문경현에 한정되고, 더구나 그 개색(改色)을 산성 안의 주민에 한정된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조선후기의 산성 경영에서 장용(醬甕) 속음이 있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었다.<sup>64)</sup> 그 사례로 전라도 장성부에 자리한 입암산성(笠巖山城)의 경우 74좌(坐)의 장독을 가져 이들을 속음에 분속시킨 것을 태인의 2용(甕)·고창 1용·홍덕 1용·정읍 2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들이 일종의 장용속음이라 보았던 것이다.

조령산성의 경우에는 수성 절목에서 장을 담그고 개색(改色)하는 방법 조목을 별도로 만들어 규정하였다. 다른 조목[屬邑 관련 조목]과 관련한 산창 기록에 의하면, 조령산성에는 상주·함창·용궁·예천·문경의 5읍 산창이 있었다. 이들 5읍 산창은 주식(主食)의 확보와 보관에 관련된 군향속음이었다면, 염장(鹽醬)은 부식(副食)을 말한 것이다.

산성의 유지와 경영에 필요한 주식의 확보는 산창(山倉)을 두는 것이고, 주식을 지키고 또, 성내 입보시를 대비한 부식의 확보 방법에 대한 조목을 마련한 것인데, 부식의 조달을 위한 첫 조처는 메주로 담근 된장 20석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을 확충하는 방안이었다.

63)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부분.

64) 차용길, 「조선후기 산성방어체제의 운영」, 『중원문화재연구』 4, 재단법인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53~54쪽.

장을 담그는 것은 매년 산성에서 받아들이는 모태(耗太)에서 10섬씩 털어내 모두 50섬을 한도로 한다 하였으므로, 아마도 3년 후에는 50섬의 간장이 되도록 목표한 듯하다. 즉, 당초 20섬에 매년 메주콩으로 10섬씩 담근 간장은 첫해인 1752년에 10섬이 더해지고, 1753년에 10섬이 더해져 1754년 말까지는 50석에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개색(改色)의 방법은 성내 주민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묵은 장을 나누어 먹고, 그만큼의 새 장을 거두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담가진 장을 받아 소비한 후 장을 담글 콩을 거두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은 장을 담근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성내에 일정 수의 주민 확보를 위한 배려(配慮)로 작용했다고 보아진다. 물론 콩의 품질 등 분쟁의 소지가 아주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나, 가장 큰 문제인 소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소금을 받아서 담그기 보다는 모미(耗米)에 의해 한꺼번에 관청의 이름으로 다량의 소금을 구입하여 장을 담글 수 있었을 것이다. 담근 장의 한계를 50섬으로 한 것은, 산성이 가진 군향 속음이 5읍이었던 것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 고을 당 10석 정도의 장을 항시 마련하여 입보(入保) 때의 부식을 항시 예비했던 것이다. 또 성내 거주 약 220여 호의 1년간 간장 소비량이 50석의 절반인 약 25석이었을 것임도 알 수 있다.

19세기 초에 이르러 군향과 장고(醬庫)의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난 기록이 있다. 즉, 1808(순조 8)년 8월의 기록에 조령별장이 군향장고의 문을 감색(監色)에게 관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노비를 시켜 여닫게 하였으며, 절반의 간장을 개색(改色)하기 위해 분급할 때에는 간장에 물을 타서 나누어주었던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절목의 해당 조목에 의한 관리의 세부적인 문제는 있었으나, 조목대로 관리되어야 하는 규식이 그대로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5)</sup>

## 라. 목재 보호와 가마꾼 차출금지 규정

조령산성의 수성 절목 내용 조목에는 ⑤번에서 금화와 금벌에 대한 조목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안에서의 금화(禁火)와 금벌(禁伐) 등의 일은 별장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거행한다. 성안의 주민과 중들(僧徒)로 하여금 힘을 같이하게 하여 근질(禁罰) 시키되, 나무를 베다가 금령을 어긴 정황으로 잡히면 작게 위반한 사람은 별장이 직접 조목에 따라 다스리고, 크게 위반한 경우는 수성장에게 보고하여 감영에 알리게 해서 귀양살이[定配] 등 엄히 벌주게 한다.”<sup>66)</sup>

조령에는 소나무가 울창하여 일찍이 품질이 좋은 소나무인 황장(黃腸)의 봉산(封山)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조령산성의 축성이 완성된 이후 황장봉산의 해제를 건의한 바도 있었다.<sup>67)</sup> 즉, 조령산성 축성이 일단락 된 후 약 5년이 흐른 1713년에 이르러 문경현감은 조령산성 내의 황장봉산에 대해 소나무가 1,000여주 남짓하고 나무 크기가 작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황장봉산의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절목을 반포해 시행한 후 거의 30여년 키워온 소나무를 더욱 잘 키워야 한다고 하여 황장봉산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령산성 내의 소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성내에서의 화재와 함께 벌목의 금지를 별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 상부에 보고하여 죄를 물어 처리토록 한 내용이 조목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65) 『승정원일기』 순조 8년 무진 8월 27일 “兵曹啓目粘連 觀此慶尙右道暗行御史呂東植書啓 …鳥嶺前別將朴再禎段 軍餉醬庫門 例使監色掌鎖 而使私奴婢開閉 及其分給 太平和水 民皆唾罵 校任差出也 捧賂之數 或至數三十兩是白遣 民訴 非有所納 則不爲許題 其他怪駭其他怪駭之事 不一而足 渠以校屬 如是作奸 極爲痛惡是如爲白有臥乎所 名以官長 如是鄙瑣作奸之狀 節節可駭 雖已遞歸 不可置而勿論 亦令該府 拿問嚴勘爲白乎旅.”

66)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67)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계사 윤 5월 9일

조령산성을 포함한 지역에는 중요한 산림자원으로 국가적 보호를 규정한 황장봉산이 있고, 성내가 이런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sup>68)</sup> 따라서 조령산성 내부 단속을 규정한 수성 절목에도 이와 관련된 조목이 필요했던 듯하다. 이미 『속대전』에는 봉산금송(封山禁松)과 관련하여 큰 소나무 10그루 이상 벤 경우는 효시(梟示)하고, 9그루 이하일 경우 사형에서 감형해서 정배(定配)한다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었던 것과 관련된다.

다음으로는 가마꾼 책출을 금하는 내용으로 맨 마지막의 ⑫번 조목이 있다.

“성이 큰길[大路]에 걸쳐있어 높고 낮은 관리들이 오갈 때에 가마꾼[藍輿軍]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을 지탱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일이다. 전에 어사가 돌아와 아뢴 때 이미 금지하고 단속할 것을 엄히 경계했지만 오래되면 쉽게 느슨해진다. 이후로는 가마를 타는 별도의 명령이나 규칙에 의한 것 이외에는, 관리와 개인 행차 때 가마꾼을 내라고 요구하는 일을 각별히 금하는 뜻을 영원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sup>69)</sup>

이와 관련하여서는 『비변사등록』에서 1749(영조 25)년 2월 6일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아들[金致仁]이 암행어사로 영남을 다녀온 다음 보고한 내용을 다시 왕에게 아뢴 내용이 실려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의정 김재로가) 또 진달(陳達)하기를,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역시 백성들에 끼치는 폐단과 관계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호서와 영남 사이에는

68) 『만기요람』 채용편 5, 松政에서 封山黃腸과 封山松田에는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심는 것을 장려하는 등의 별도 절목이 1684년(갑자, 숙종 10)에 반포되었고, 이후 1788년(무신, 정조 12)에는 개찬되어 반행되었다. 예천의 황장 1처, 문경의 황장 1처 등 두 곳의 황장봉산이 유지되었다.

69)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신미 12월 16일의 「경상도문경현조령산성절목」의 해당 부분.

조령(鳥嶺)이 있습니다. 이곳은 큰 길이고도 매우 험준하며 관방(關防)으로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조령 아래로 초곡(草谷)이란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백성들을 모집하여 마을을 이룬 곳으로 참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생활할 도리가 없어 오직 오가는 사람들의 짐을 운반해 주고, 그 품삯(雇價)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령을 넘는 관리들의 행차에는 수령이 가마꾼(藍輿軍)을 내어주는데, 근래에는 선비들이 사적(私的)으로 다닐 때도 독촉하면 모두 내어주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에 차출되어 농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활의 방도를 버리게 되고, 오히려 남여군 일로 분주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으므로, 도신(道臣, 관찰사)도 간혹 신칙하여 금단케 하였으나 오래되자 해이해졌습니다.

이번에 신의 아들이 암행어사로 왕래할 때 그 폐단을 익히 듣고 복명(復命)하던 날 아뢰자 임금님께서 매우 놀라시며 ‘남여군 노릇을 중히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봉진(封進)한 문서를 살펴보시느라, 그에 대한 결정된 하답(下答)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본도에 분부하여 공무가 아닌 개인의 일로 다닐 때 남여군을 일체 엄히 금하도록 하고, 금지령을 어기고 강제로 요구한 사람은 발견되는 대로 논죄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sup>70)</sup>

이처럼 가마꾼 책출 금지의 조목도 당시까지 논의되던 현안문제로 파악된 일이 조율된 사항으로, 이를 정리해서 짧게 금령 조목으로 마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수성용 군기의 제작과 보유실태

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과 주민과 군인들이 있어야 했다. 또 얼마간의 농성을 위한 식수와 주식 및 부식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였다.

70) 『비변사등록』 영조 25년 기사 2월 6일.

이들 여러 요소와 함께 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군기(軍器)들은 대략 군기속읍에서 제작·보관·개수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에도 지역 방어에 필요한 여러 기계와 시설들은 각급 진영에서 마련해 보관하고, 중앙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였다. 조령산성의 경우에는 축성이 완료됨과 함께 화포와 화약의 제작, 제조가 상주에서 이루어 지도록 계획되었던 사실이 있으나, 이에 관련된 조항은 수성 절목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령산성에 비치할 명분으로 특별히 군기의 제작이 논의되었고, 그 군기들이 훗날 북한산성으로 옮겨진 사실을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조령산성에 비치할 군기(軍器)의 새로운 제작과 그 이속(移屬) 논의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온다. 즉, 조령산성의 축성이 진행되던 1710(숙종 36)년 4월에 군기 제작이 시작되었다.<sup>71)</sup>

처음 조령산성의 수축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군기는 거의 전량이 상주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물량은 매우 많은 것이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군기의 제작은 중앙에서 특별히 파견된 금위영 장교 지극청(池克淸)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포상을 논의한 기록에 의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산성과 관련해 새로 만든 무기는 다음과 같다.

[1711년 조령산성을 지키기 위해 새로 만든 군기]<sup>72)</sup>

71)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경인 4월 12일 “判敦寧府事閔鎮厚 行戶曹判書李仁晔…(鎮厚曰)…又所啓, 鳥嶺山城之築也, 初不劃給物力, 故虹蜺近處之外, 縣監李重昌, 自備設築, 故聞其城子所見不固 然而既有城子 則不可無守禦之具 以尙州丁亥條捧留大同米 料理報本之後 以其剩餘 方欲造置佛狼機 而軍器不敢私造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에서 보이며, 이는 군향곡의 설치와 같이 논의된 것이다.

72)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신묘 10월 23일 “禁衛營啓曰 各軍門將校監造軍器者 勿論弓銃刀槍 若過千數 則必皆論賞矣 本營校鍊官前萬戶朴好問監造 …… 故判書李(寅燁)欲造鳥嶺新城軍器 銅鐵米布 備置嶺邑 未及打造前 大將閔(鎮厚)陳達筵中 擇送本營將校前別將池克淸使之打造 今始畢役上來 而所措備 母砲二百五十位 子砲一千二百六十位 中銃五十四柄 一窩蜂一坐 威遠砲十五坐 同砲所用水鐵大丸八百十介 中丸八百五十五介 子砲所用水鐵小丸一萬三千九百五十一介 鳥銃二百柄 硫黃一百斤 鉛丸六萬介 火藥一千斤 大銅爐口一百坐內 鳥銃二百柄 硫黃一百斤 鉛鐵三百斤

모포(母砲) 250位(→1차 150위, 2차 100위를 북한산성으로 이관)  
 자포(子砲) 1,261位(→ 757위를 북한산성으로 이관)  
 자포에 쓰는 무쇠 작은 탄환[子砲所用水鐵小丸] 13,951개(→ 8,400개를 북한산성으로 이관)  
 중총(中銃) 54柄(→ 50자루를 북한산성으로 이관)  
 일와봉(一窩蜂) 1坐  
 위원포(威遠砲) 15坐, 무쇠 큰 대포알[同砲所用水鐵大丸] 810개, 중환 855개  
 조총(鳥銃) 200柄(→ 모두 북한산성으로 이관)  
 유황(硫黃) 100斤  
 납탄환[鉛丸] 60,000箇  
 화약 1,000斤  
 대동로구(大銅爐口) 100坐(→ 모두 북한산성으로 이관)

이들 군기 가운데 특히 조총 200자루와 각종 총포의 탄환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유황 100근, 납 300근, 달군질 한 쇠[薪鐵] 1만 5천근, 놋쇠합금용 주석[鑄鐵] 148근 6냥 등은 그 준비를 스스로 하여 사용했다고 하였다.

이때 상주에서 만들어진 무기는 중앙의 금위영 소속 장교를 보내 만든 것으로 불랑기(佛狼機) 250좌와 중총 54자루, 위원포 15좌와 조총 200자루가 대표적인 것인데, 당시 조령산성이 축성되어 있었지만, 아직 주관하는 독진체제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상주와 조령산성이 있는 문경 등의 주변 고을에 나누어 보관하기 어려웠다.

마침 당시 도성의 배후에 축조된 북한산성의 군기를 충실히 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랑기 100여 좌를 나누어 이관(移管)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sup>73)</sup> 이들 새로 만든 무기들은 1712년 2월 18일 거의 대부분 북한산성

薪鐵一萬五千斤 鑄鐵一百四十八斤六兩 亦自料理別備矣所造砲銃等物 已過千數 其外自備者 亦不少 朴好問池克清等 合有論賞之典 並令該曹考例稟處 池克清打造軍器時 尙州牧監牧官折衝鄭有賢朴再根將官鄭兌載及色吏一人 亦多勤勞云 令該曹參酌施賞何如 傳曰允.”

73)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신묘 10월 23일 및 24일에 疊記된 내용에 “大臣備局堂

으로 옮겨지도록 왕의 재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불랑기 모포 250위 가운데 150위(位)와 자포 757문, 무쇠로 만든 작은 탄환 8,400개를 북한산성으로 이관하여 옮기는 것이었다.<sup>74)</sup>

이후 1712년 10월에는 조태구(趙泰壽)의 건의로 임난이어(臨難移御)의 곳으로 된 강도(江都)와 북한산성의 군비 마련은 황해도 장연(長淵)에서 만들어질 불랑기 모포 109위를 북한산성과 강화도에 절반씩 운반하게 하는 한편, 특히 북한산성에는 당초 조령산성을 위해 만든 군기의 대부분을 옮기게 되었다.

서울 쪽으로 운반하던 당초 조령산성 소용의 무기들이 충주 한강가의 창고까지 운반되어 있던 도중, 다시 조령산성에 두려던 군기의 대부분도 북한산성으로 옮겨지는 추가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sup>75)</sup> 이에 따라 불랑기 모포 100위와 중총 50병, 조총 50병, 동로 200좌까지 북한산성

上引見入侍時 行兵曹判書崔錫恒所啓 故判書李寅燁 爲慮關陘疏虞之弊 築城鳥嶺之後 不可無守城器械 故判書閔鎮厚 陳達筵中 押送禁衛營將校 使之打造佛狼機二百五十坐 中銃五十四柄 威遠砲十五坐 鳥銃二百柄 今方留置於尙州牧云鳥嶺城子 步數不至太廣 設置大砲之處 想必無多況所築城中 旣無主管 又無主管之人 勢將分置於傍近列邑 其在藏置之道 亦甚虛疏 今此北漢築城之役 禁衛營所關之處 地形稍涉平夷 步數亦且闊大 而本營軍器中 大砲絕少 若以尙州所置佛狼機百餘坐 酌量彼此移置北漢 則似爲兩便 故敢此仰達上曰 事甚便好 依爲之”가 있는데, 『미변사등록』의 해당 날짜 기록과 내용이 같다.

74)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임진 2월 18일 “南至熏以禁衛營言啓曰 本營將校 監造佛狼機 留置尙州者百餘坐移北漢事 前冬臣錫恒陳達蒙允矣 今當解凍 可以運來 而佛狼機元數二百五十坐內 一百坐 子砲五百三門 及中銃五十四柄 威遠砲十五坐 鳥銃二百柄 一窩蜂一坐 硫黃一百斤 鉛丸六萬箇 火藥一千斤 大銅爐口一百坐 水鐵大丸八百十箇 中丸八百五十五箇 子砲水鐵小丸五千五百五十一箇 自尙州 移送慶廈 使之會錄于鳥嶺山城事 分付於慶尙監營 其餘母砲一百五十位 子砲七百五十七門 水鐵小丸八千四百箇 則當運來於北漢 自尙州忠州樓巖至 刷馬八十一駄價 自樓巖至京江船價 令宜惠廳 依他例題給領來 將校所騎刷馬及支饋等事 竝分付沿路各邑何如 傳曰允.”

75)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임진 10월 10일 “趙泰采所啓…又所啓 故判書李寅燁在時 措備物力 欲造佛狼機於尙州地 而未果矣 其後閔鎮厚 定送將校 鑄成二百五十位 一百五十位則已爲輸來 方在江倉 一百位留置鳥嶺山城云 鳥嶺 城築不完 軍器備上 姑不緊急 以鑄鐵 鑄成火器 誠爲未易 而留置不緊之處 不無虛疎之弊 尙州所在一百位 亦爲運來 與江倉所在 竝上於北漢 似爲得宜 其時將校 以其餘力 措備砲銃藥丸銅爐口石硫黃等物 而其中 中銃五十柄 鳥銃二百柄 銅爐一百坐 亦令移置北漢 而其他則留上鳥嶺何如 上曰 依爲之.”

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므로, 대형 화기로 조령에 남은 것은 거의 없고, 더 이상의 군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재료와 기구 이외에 남은 것이 많지 않았다.<sup>76)</sup>

조령산성과 관련된 군기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은 것으로는 19세기 전반의 『경상도읍지』가 있다. 이에 의하면 문경현의 군기로 당초에 있던 것, 1752(영조 28)년 독진이 될 때 특별히 준비한 것과 이듬해까지 만들어진 것을 구분하는 동시에 해당 군기가 보관된 곳을 구분하여 기록한 점 등 기록방식에서도 다른 고을의 군기관련 기록과 차이가 있다.

군기가 보관된 곳을 기준으로 조령진·문경현·조령산성·선암산봉수대와 탄항봉수대 등 두 곳 봉수에 나누어 둔 것[分置兩站烽燧]로 구분하고 있다.

군기의 제작연도와 제작 책임자에 따른 구분은 1752년[임신別備], 1753년[계유別備], 1748년[무진縣監別備], 1763년[계미別將別備]의 네 차례로 구분되어 나타나 있다.

① 당초 문경현에 있던 군기는 41종으로 깃발 등 시각과 소리로 알리는 지시정보용품, 행군과 주둔 및 취사관련 도구류, 무기 및 무기관련 무구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무기류는 각종 활[弓]과 화살[箭]·활줄[弓弦] 및 각종 창[槍], 환도(環刀), 조총(鳥銃)과 약통(藥桶)·약승(藥繩)·부시[火鐵]·화약·납탄알[鉛丸], 마름쇠[菱鐵] 등이 있었다.<sup>77)</sup>

76) 『만기요람』 군정편 3, 충용청 군기 北漢訓禁禦僧倉에서 中銃 54柄이 기록된 이외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는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戊寅 정월 4일에 중총 한 자루 제작에 銅鐵 200斤이 들어간다고 한 것이 있다. 중총은 조령산성 군기용으로 상주에서 54자루가 제작된 것을 북한산성으로 옮겨간 위의 기록에 50자루라 했으나, 실상은 제작된 전량인 54자루가 옮겨진 것이라 여겨진다. 중앙의 5군문이 가진 군기에 중총은 유일하게 북한산성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다.

77) 깃발과 신호용, 야영장비 등을 뺀 무기류로는 黑角弓 70張, 校子弓 120張, 弓弦 50箇, 長箭 333部, 片箭 200部, 大箭 1柄, 筒兒 175箇, 長槍 103柄, 三枝槍 4柄, 火繩 280沙里, 環刀 27柄, 拒馬槍 56箇, 鳥銃 253柄, 耳藥桶 183箇, 南飛蓋 177箇,

② 1752년 독진으로 되면서 별도로 마련한 군기[임신別備]는 28종으로 모두 조련(操鍊)과 관련되는 것 들 뿐이고 개인소지 및 공용의 수성용 무기류는 없다.

처음 문경현이 구비하고 있던 군기는 다른 고을들이 장만하여 비치해야 되는 정도의 개인 및 공용 무기와 화기, 그를 운용함에 필요한 부속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구성된 군기는 이후 독진으로 된 1752(임신)년 별도로 마련된 군기들에서도 개인과 공용의 무기류의 증가는 없고, 모두가 독진의 체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각종의 깃발과 성조(城操)와 군사 훈련에 필요한 각종 지시판과 과녁, 방향을 알리는 깃발, 군령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의장용품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었다.

③ 1753년 별도로 마련된 군기[계유別備]로서 [본진에 있는 것]의 순수 무기류로는 火箭鐵燈 2箇, 小手弩機 10坐, 小手弩弓 10張, 小手箭 100箇가 있고, [본현에 있는 것]은 매우 증가되어 鳥銃 700柄, 校子弓 200張, 南飛蓋 300箇, 火藥桶竹 9,000箇, 耳藥桶 300箇, 火鐵 300箇, 環刀 200柄, 火繩 300沙里, 長箭 2部, 銅爐口 80坐, 石硫黃 7,443斤2兩, 火藥 4,442斤10兩5錢, 鉛鐵 60斤, 鉛丸 110,000箇, 火藥升 300箇으로 증가되었다.

④ 1808년 현감이 별도로 마련한 군기에는 [본현에 있는 것]으로 校子弓 50張, 長箭 17部, 편전 68部, 桶兒 33箇, 弩機 10坐, 창 20柄, 校子大弓 10張, 校子中弓 5張, 手弩 5坐, 鳥銃鎖金 700箇, 火繩 400沙里, 鉛丸 10,000箇를 증가시켰으며, 별도로 [산성에 있는 것]으로 장창 50柄이 만들어졌다.

⑤ 1823년 별장이 별도로 마련한 군기로 [산성에 있는 것]으로 校子弓 5張, 長箭 3部, 片箭 2部, 桶兒 17箇가 증가되었다.

---

藥升 163箇, 火藥 943斤3兩5錢5分, 鉛丸 285,813箇, 石硫黃 99斤4兩, 火鐵 213箇, 菱鐵 1,033箇가 있었다.

⑥ 이밖에 조령 소속인 두 곳의 봉수대에 나누어 비치한 군기는 거의 신호용과 간단한 개인화기인데 무기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는 봉수마다 조총 1자루(柄), 火箭 9箇, 長箭 1部, 편전 1部, 활[弓子] 1張, 桶兒 1箇, 環刀 1자루, 창 1자루, 勝字銃 1柄, 몽돌[無凌石] 5訃, 낫[鎌子] 3柄, 戰角 1, 火繩 1沙里, 화약 5兩이 각기 비치되어 있었다.

## 5. 맺음말

조령산성은 1708(숙종 34)년 수축되었다. 산성 운영의 규칙인 수성 절목은 1749년 경상도관찰사 남태량의 책임으로 초안이 마련되어 1751(영조 27)년 12월 비변사의 검토가 완료되고, 왕의 재가로 확정되었다. 이후 1752년부터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조령산성을 독자적인 군진(軍鎭)으로 운영하는 기본 방침으로 적용되었다.

이미 다른 논고를 통해 파악된 조선후기 경상도에서 운영된 6곳의 산성들은 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 후기 경상도의 산성 6곳은 모두 독진(獨鎭)으로 운영되었다. 감영 배후의 가산산성(架山山城), 우병영이 직할하는 축석산성(矗石山城), 동래 금정산성(金井山城), 선산 금오산성(金烏山城), 성주 독용산성(禿用山城), 여기서 다른 문경 조령산성(鳥嶺山城) 등이었다. 이들 산성들은 대부분 입보농성(入保籠城)을 위해 경영되었다. 그러나 조령산성은 낙동강 유역의 영남에서 한강유역의 도성으로 통하는 가장 큰 교통로를 직접 차단한 관성(關城)이란 점에서 다른 산성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었다.

조령산성은 고개를 넘기 위해 남쪽의 계곡 입구 첫 관문(주흘관)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협곡을 이룬 좁은 계곡을 거슬러 올라 2관문(초곡관)을 통과, 다시 고개 위의 3관문(조령관)을 지나는 길을 차단한 관성이지만,

이 길의 동쪽 높은 위치에 예로부터 입보(入保)하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어류성(御留城)의 터전을 포함한 2관문 이북을 내성(內城)으로 하고, 1관문을 외성으로 하는 내외 2중의 산성을 형성하였다. 경상북도 북부의 낙동강 발원지 부근 고을들의 세금이 이 고개를 통해 북쪽으로 고개를 넘어 한강 유역의 큰 도시인 충주에 이르러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도성으로 운반되었으므로, 세곡운반 루트의 길목을 지키는 교통로를 지키는 곳이었다.

이러한 관성 겸 산성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조령산성이 자리한 고을인 문경현은 성 밖의 관아에 6품의 음관이 수령(守令)으로 있으면서, 항시 산성에 머무르는 4품의 무반인 산성별장에게 평상시 산성을 관리하도록 하였다.<sup>78)</sup> 이들은 산성을 지키는 연습과 실제 방어할 때에는 수성장과 수성중군이 되어 휘하 관속과 군병 및 주민들을 통할하도록 절목에 규정되었다.

절목에는 조령산성의 방어를 위해 ‘산성작대군’을 조직하도록 규정했는데, 검토결과 이미 지방군으로 조직된 속오군을 산성으로 이속시킨 속오군 병력을 주축으로 하였다. 115명 전후로 구성된 초(哨)를 단위로 3개의 단위부대 병력에 4개 부대의 병력을 더 배정한 것이며, 후에는 이웃고을인 함창의 속오군도 합쳐 모두 9초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또 성내에 거주하는 200호 이상의 주민들로 지역 군대조직을 하도록 하고, 성안의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들로 약 30명 내지 50명 규모의 승군을 조직하여 개별적 사격술 연습과 봄과 가을에 모여서 합동 군사연습을 하도록 조목이 마련되었다.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신분제에 기초해 군역(軍役)을 경제적 부담으로 대신하는 수첩군관은 300명에서 550명까지 확충되도록 규정하였고, 이들에게도 형식상 사격술을

78)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운영된 40개소의 산성에서 현감이 수성장인 사례는 문경 조령산성과 은율 구월산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음관 6품인 경우가 문경현감이 고, 은율현감은 「不分文武蔭仕 併皆六品」(『여지도서』 황해도 은율현 관직)이라 하였다.

습득하고, 연습에 참가토록 규정되었다.

성벽의 수축은 산성창고의 조적을 통한 이자로 받은 곡식과, 군사들이 군역 복무 대신 내는 신역을 대신하는 포목을 재원으로 하여, 주로 승군을 동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산성 운영의 경제적 기반은 봄에 대여하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는 방법으로, 그 관할 기관이 중앙의 호조와 비변사, 지방은 감영과 산성에 소속된 군향속읍 5개 고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시기에 따라 그 규모가 쌀과 콩 등의 전통적인 부피단위인 섬-말-되-홉-작의 단위로 기록되어 나타나 있다. 이는 당초 산성의 축조 때 중앙과 지방의 축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 밑천이 얼마였는가에 따라 그 잔여분이 계속 조적되면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령산성에는 긴급한 때에 사용할 군량 약 1만석 이상을 보관하는 목표가 세워졌다. 이 군량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은 곡식의 이자를 축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었다. 이를 위해 산성에 소속된 5개의 고을들은 성내에 창고를 두어 관리하였다.

산성의 공동운영에 참여토록 규정된 5개 고을은 당초부터 상주진의 소속도 있으나, 보다 동북쪽의 안동진관 소속에서도 예천과 용궁 등 두 고을이 배속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산성에 하나의 진관 소속 군사와 군향이 배속되지 않고 복수의 진관 소속 고을이 속읍으로 된 것도 조령산성이 가진 또 하나의 특수한 점이었다.

산성의 안팎은 소나무가 울창하여 이미 보존구역으로 설정된 곳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임무도 규정되었다. 조선 후기의 산성들에서 이처럼 성이 자리한 산이 황장목 보호지역으로 된 곳이라는 점도 조령산성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산성의 수축이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대포와 조총 및 탄환이 제조되었다. 큰 대포 250문 이상을 포함하는 각종 총포가 제작되었으나, 서울 도성 배후의 산성인 북한산성이 수축되자 이곳의 무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시되어 조령산성의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은 북한산성

으로 옮겨졌다. 이후 산성을 지키기 위한 각종의 깃발과 신호용 악기, 취사와 야영에 필요한 도구, 통신시설의 유지와 신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의 군사장비는 착실히 마련되어, 1894년의 기록에 매우 자세한 목록이 남아있다. 이들을 통해 다른 산성들과 달리 조령산성은 전통적인 군사제도가 유지되는 마지막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그 전략적 중요성이 인식되어 군사력의 확충이 이루어졌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4. 9. 24, 심사수정일: 2014. 11. 20, 게재확정일: 2014. 11. 21]

주제어 : 조령산성, 수성 절목, 속오군, 산성작대군, 승군, 수첩군관, 성첩 수축, 조적, 별장

<ABSTRACT>

## Defense Regulation and Administration of Joryeong Fortress in Late Joseon Dynasty

Cha, Yong-geol

Joryeong Fortress was repaired in 1708. Jeolmok(regulations, the operating rules of the fortress) of the Joryeong Fortress had been drafted in 1749, completed a reviewal of the draft occurred in December 1751, and confirmed by reporting to the king, and operated by jeolmok regulations since 1752 to 1894 AD.

The fact that it was a stone wall which blocked big traffic route directly was the characteristics of Joryeong Fortres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fortresses. Therefore, it was constructed for blocking the route leading up to the mountainous pass through the first gateway located on the entrance of valley, the second gateway located on the narrow valley developed into gorge, and the third gateway also located on the high position of this route. All these terrain features formed a solid double layered fortress like with inner and outer curtain walled fortress having advantageous geographical conditions for entering the fortress while the defence actions were carrying out.

Due to that the tribute of the villages near the Nakdonggang River in northern part of Gyeongsang province was transported through this mountain pass to the north and stored in the Chungju city on the Han River basin for the transport to the capital, Joryeong Fortress was the key place for protecting the tribute transporting traffic route.

Despite of the functional duality of Joryeong Fortress, the governor of Mungyeong-hyeon county was a lower rank official outside the fortress. it made the military officer byeoljang manage

the fortress usually. According to the Jeolmok(regulation), these two government officials had to control the officers, military forces, and the civilians as a Suseongjang(general of defence forces) and a Suseongjunggun(military officer) at the training and actual defence situations.

According to the Jeolmok regulation's bring up the clause on defensive forces of Joryeong Fortress, 'SanseongJakdaegun' (fortress guardian shoulder group) was made up based on the Sogogun composed of regional army. The basic tactical unit named 'Cho (哨)' was consisted of 115 men.

Besides, militia was organised with about 300 households civilians living in the fortress and 'Seung-gun' unit was organised with about 50 monks living at two temples in the fortress. In the Jeolmok regulation, the clause of gunnery exercises of each unit and joint forces exercise in the spring and autumn season was added.

'Sucheopgunguan'(based on the social class system reflected on social actualities at that time, people who substitute their duty of military service into economic burden) were extended from 300 to 550 people. According to the clause, they had to learn the shooting skills and join the joint forces exercise perfunctorily(out of formality).

In the case of repairing fortress walls and battlements, the 'Jojeock'(the interest income of grain storage) of fortress, the linen and cotton as a substitution for military service, and the mobilized Seung-gun had to be used especially when the repairing scale was large. Therefore, in many records, competent organization of Joryeong Fortress's Jojeock was classified by categories, the national government office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nd 5 counties belong to the fortress. Depending on the time, Jojeock's quantity was recorded as a traditional unit of volume, such as rice and beans. These records indicated that depending on how much was the original financial resourc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building the fortress, the remainder was used as Jojeock to repair the fortress.

For the urgent usage of Joryeong Fortress, the goal that stores more than about 10,000 'seok'(120kg) of rice rations was set up. The primary method to achieve the goal was accumulating the interest of the saved army rations. For all of these process, 5 counties belong to the fortress made their own storages each and control the financial issues such as Jojeock and Gaesaek(renew the old rations).

The area of Joryeong Fortress was designated as a pine tree preserve area with other regulation. So, the Byeoljang supervised and managed it. This was also very distinguishing character of Joryeong Fortress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For the tactical demands of defending the Joryeong Fortress, many canons, rifles and ammo were produced. Approximately over 250 large canons and various firearms were manufactured, but in the process of repairing the Bukhansanseong Fortress(located behind the capital of Joseon Dynasty), weapons were relocated to secure the Bukhansanseong Fortress.

Since then, according to the very specific list recorded in 1894, military equipments such as various flags, instruments for the signal, and the equipments for the maintaining communication facility were steadily prepared. It can be seen that Joryeong Fortress had expanded and improved the military strength until the final stage of the traditional military system unlike the other fortresses on account of the recognition of the tactical importance consistently.

Key Words : Joryeong Fortress(鳥嶺山城), Suseongjeolmok(守城節目:Defence Regulation), sogogun(束伍軍), SanseongJakdaegun(山城作隊軍), Seung-gun(僧軍), Sucheopgunguan(守堞軍官), repair walls and battlements(城堞修築), Jojeock(糶糶), byeoljang(別將).